

이 안내서는 '24. 1. 1.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4)

2024. 1.



고용노동부

□ 개요

- 그간 산업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확대,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중복 완화 등 교육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기여

□ 주요 내용

- ① (보수교육 이수기간)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 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제29조제1항)
- ② (정기교육 주기)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확대(별표 4 제1호가목)
- ③ (단기근로자의 교육시간)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8시간에서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별표 4 제1호나목)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별표 4 제1호 비고 2)
- ④ (교육중복)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은 해당 교육과정별(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 교육시간 2분의 1 이상 이수하도록 완화(별표 4 제1호 비고 3)
 -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 감면(별표 4 제1호 비고 4, 5)
- ⑤ (관리감독자 교육)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시간, 교육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1호의2, 별표5 제1호의2)

목 차

I. 법정 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6
 - 가. 개요 6
 - 나. 정기교육 17
 - 다. 채용 시 교육 28
 -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1
 - 마. 특별교육 33
 - 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44
2. 직무교육 47
 - 가. 신규교육 48
 - 나. 보수교육 50
 - 다. 전문화교육 52
 - 라. 직무교육의 면제 53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54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5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62
6. 5대 법정 의무교육 안내 63

II.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66
2.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 71
3.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72
4.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76

III. 안전보건교육기관·직무교육기관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83
2. 직무교육기관 87
3.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제도 및 현황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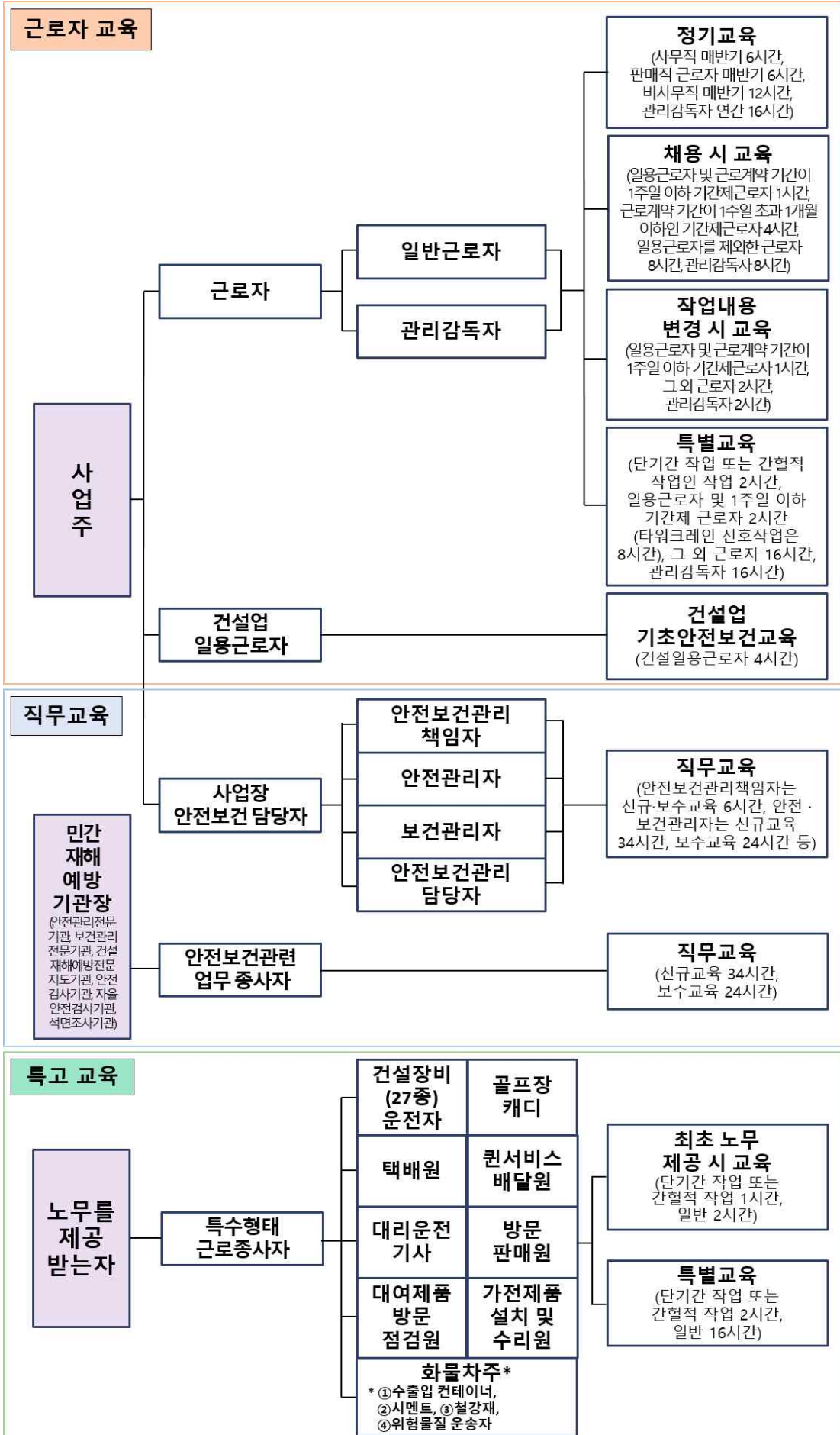
IV. 안전보건교육 관련 Q&A

1. 총괄 114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25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44
4. 직무교육 148
5. 안전보건교육기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150

VI. 부 록

1.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수정·변경 이력 156
2.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비교(안전보건교육 부분 발취) 159
3.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195
4. 한국표준산업분류 238

산업안전보건교육 체계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 등 대상 교육)

구분	항목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
1	교육대상	■ 산안법 제29조제①②③	■ 산안법 시행령 [별표1]	■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①	-
2	교육횟수 및 시간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3	교육방법	■ 산안법 제29조제④	-	-	■ 제3조의2 제①②③④
4	교육강사	-	-	■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③	■ 제3조의2제③ ■ 제10조 ■ [별표1]
5	교육내용	-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6	교육기관	■ 산안법 제33조제①	■ 산안법 시행령 제40조제① ■ 산안법 시행령 [별표10]	■ 산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①~⑥	■ 제3조의2 제③④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산안법에 규정된 건설기계 운전자 등 9개 직종 종사자 대상 교육)

구분	항목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
1	교육대상	■ 산안법 제77조제②	■ 산안법 시행령 제68조	-	-
2	교육횟수 및 시간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3	교육방법		-	-	■ 제3조3 제①②③
4	교육강사		-	■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③	■ 제3조의3제③ ■ 제10조 ■ [별표1]
5	교육내용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6	교육기관		-	■ 산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①~⑥	-

□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

구분	항목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
1	교육대상	■ 산안법 제32조제①	-	■ 산안법 시행규칙 제29조제①②③	■ 제14조
2	교육횟수 및 시간	■ 산안법 제32조제②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
3	교육방법	■ 산안법 제32조제①	-	-	■ 제15조
4	교육강사	-	-	-	■ 제15조 제②
5	교육내용	-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제15조 제②
6	교육기관	■ 산안법 제33조제①	■ 산안법 시행령 제40조제③ ■ 산안법 시행령 [별표12]	■ 산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①~⑥	■ 제18조

법정교육

I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가. 개요
 - 나. 정기교육
 - 다. 채용 시 교육
 -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마. 특별교육
 - 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2. 직무교육
 - 가. 신규교육
 - 나. 보수교육
 - 다. 전문화교육
 - 라. 직무교육의 면제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6.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가. 개요

- (목적)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대상)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내용)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주 등은 근로자등에게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
 - ①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 ③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①단기간 작업(2개월), 간헐적 작업(60일) 작업인 경우와 ②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 (분류)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①정기, ②채용 시, ③작업내용 변경 시, ④특별)을 실시해야 함
 - ①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②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 ④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1시간)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방법) 교육형태 중 다음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④ 비대면 실시간교육, ⑤ 우편통신 교육(관리감독자 한정)

-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함
·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함

교육방법	준수 사항
현장교육 (안전보건교육 규정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 ■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
인터넷 원격교육 (안전보건교육 규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 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본 안내서 p.13 확인 ■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교육(모바일교육) 시 다음 항목을 준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실시 전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 금지 내용을 공지 후 확인 -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 -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원격교육 수강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교육으로 재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안전보건교육 규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2제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

□ (강사)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아래와 같음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⑥ 산업보건의
-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 (교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함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교육제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 안전보건교육 중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만 제외되는 것으로 보건교육은 실시해야 함</p>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p style="text-align: center;">※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p>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 어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녹음시설 운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업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연구개발업 ■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p>※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 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음. 다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p> <p>※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참고</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 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장.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p>※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음</p>
<p>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p>※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p>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FAQ)]

- ◇ 안전보건교육 대상 업종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본 안내서 66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교육의무 주체는 누구인지
 - 보통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의무 주체임
다만,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의무 주체임(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 교육대상은 누구인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제5조 및 제6조 관련)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 기준 <개정>

구분	기준
가. 전산시스템	1) 네트워크: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할 것 2) 방화벽: 보안서버 이외에 외부해킹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나 방화벽을 갖출 것 3) 홈페이지: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생모듈, 강사모듈, 관리자모듈 등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나. 교육내용	1) 전체 교육 시간대별 세부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제시된 교육내용이 정확하여야 하며, 텍스트, 시각자료, 청각자료 등을 통하여 교육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을 것 2) 적절한 보충·심화학습이 가능하고 교육 진행을 위한 안내 설명 및 도움말 기능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을 것 3) 교육자료의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고 교육내용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할 것
다. 교육관리	1)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2)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3)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순차학습을 통하여 교육생이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하며 수시로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질의)토록 하여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기관 소개, 교육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교육생 모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5) 수강번호,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교육생 모듈)에 갖추어져 있고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교육생 모듈)에서 가능할 것 6) 교육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일, 평가결과 송부일 등 수강현황이 웹상(관리자 모듈, 교육생 모듈)에 기록되고 교육생의 개인이력(수강번호, 성명, 소속, 연락처 등)과 학습이력(수강과정, 수강신청일, 수료일 등)이 교육생모듈에 개인별로 갖추어져 있을 것 7) 교육참여가 저조한 교육생들에 대한 독려 시스템(관리자 모듈)이 갖추어져 있을 것 8) 교육생모듈 초기화면에 교육생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
라. 교육평가 관리	<공통>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는 ①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학습평가 ②개인별 보고서 등 과제물에 의한 과제평가 ③학습진도율평가로 구성할 수 있다. 3)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평가는 주어진 교육기간 내에 응시 및 제출한 것에 한정하여 득점으로 인정한다. 5) 학습평가의 시험은 문제 pool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출제는 5개 유형 이상을 확보할 것 6)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 과제평가를 위한 과제제출 등의 평가도구가 적절하고 평가 도구별 세부 내역 및 배점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고 이를 안내할 것 7) 베낀 답안 방지대책 및 베낀 답안 발생시 처리기준이 있고, 교육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p><인터넷 원격교육></p> <p>8)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p> <p>9)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10)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의 과목별 교육시간을 90% 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p> <p>11) 9)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은 학습평가 대신 학습평가와 과제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평가의 배점 기준은 20%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12) 11)에 따라 과제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기관은 제출된 과제물을 검사하여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교육생모듈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우편통신교육></p> <p>1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우편통신교육의 교육생에게 시험일시 또는 과제물 작성 방법과 제출기한을 교육의 실시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p> <p>14) 우편통신교육의 평가에 대한 인정기준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정한다.</p> <p>15) 사업주는 우편통신교육을 수강하였으나 14)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한 관리감독자에게 우편통신교육 외 다른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	----------------------------------------------------------------------------------------------------------------------------------------------------------------------------------------------------------------------------------------------------------------------------------------------------------------------------------------------------------------------------------------------------------------------------------------------------------------------------------------------------------------------------------------------------------------------------------------------------------------------------------------------------------------------------------------------------------------------------------------------------

2. 비대면 실시간교육 기준 <신설>

구분	기준
가. 플랫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 화상으로 표출되고 쌍방향 의견 교환이 가능하며 보안 기능이 구축된 플랫폼을 사용할 것 2) 강사와 교안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을 것 3) 강사가 교안에 판서를 할 수 있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할 것
나. 과정 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교육시간 동안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것 2) 과정 개설은 과정당 50회선 이하로 운영할 것 3) 회선당 인원은 1명으로 할 것
다. 정보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 진행 절차, 접속 주소(URL), 웹카메라·마이크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교육생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2) 교육목표, 출결 관리, 수료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
라. 수강 신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등 수강신청 현황을 갖출 것
마. 출석·수강 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플랫폼 화면, 실시간 게시판, 접속기록, 별도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생 출석·수강 여부를 과목별(차시별)로 확인하고 출결관리 기록을 보존할 것 2)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SNS,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체 가능 3) 교육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바. 질의 및 응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게 운영할 것

1 (별표2 라목 제8호, 제9호) 학습평가 실시 시점 및 이수 기준

- 8)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9)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습평가 실시 시점은 ①개별 과목(차시) 이수 직후 실시하거나 ②과목 구분이 명확*한 경우 쏠 과목 이수 후 일괄적으로 평가 가능

* 학습평가를 일괄 실시하더라도 ○○과목, □□과목, △△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과목별로 학습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 과목별 평가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며, 해당 과목 총 점수의 70% 이상 득점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 판단

* <예시> 각 과목이 100점 만점일 때 총 점수는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이수

① A과목의 학습진도율을 95% 이수하고 학습평가(시험)은 50점 만점에서 30점 맞은 경우
→ 학습진도율 $95 \times 0.2 + (3/5 \times 100) \times 0.8 = 67$ 점(<70점)으로 A과목 미이수

② B과목의 학습진도율을 90% 이수하고 학습평가(시험)은 50점 만점에서 40점 맞은 경우
→ 학습진도율 $90 \times 0.2 + (4/5 \times 100) \times 0.8 = 82$ 점(>70점)으로 B과목 이수

2 (제5조 제1호) ‘강의 동영상’의 정의

제5조(인터넷 원격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 ‘강의 동영상’의 형태는 강사가 직접 출연(또는 녹음)하거나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의미

* 강사 대신 만화 캐릭터 등을 활용하더라도 강사가 직접 녹음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였다면 적합

** ‘강의의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

③ (제3조2 제2항 제5호) 단서 부분에 대한 해석

* 제3조의2 제3항 제3호, 제15조 제2항 제5호 단서 부분과 동일

제3조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 다른 형태의 교육(집체 등)과 동일하게 인터넷 원격교육도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강사가 되어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과 고시 별표 1

-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번 제작되면 반복재생된다는 점을 고려, 강사가 '교육과정 제작에 직접 참여'하면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임

- 여기서 '교육과정 제작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강사가 동영상 촬영 및 녹음, 교안 제작(또는 교육내용 결정)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종합해보면 인터넷 원격교육 시 강사는 교육과정 제작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나 그 방식은

- ① 현행고시 제5조 제1호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준에 따라 강사가 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동영상' 형태로 과목당 50%(30분) 이상을 구성하고,

- ② 이외의 시간은 만화, 강사가 출연하지 않는 동영상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강사의 주관하에 교육과정 제작되어야 함

나. 정기교육

① 근로자

- (개요) 사업주가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 (교육시간)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산업재해 발생	무재해	산업재해 발생	무재해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3시간	3시간	1.5시간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6시간	6시간	3시간

- (매 반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6개월을 의미함

* 예시: '21.5.18. 입사 근로자의 반기는 '21.5.18. ~ '21.11.17

- (무재해) 전년도에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산업재해**: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 무재해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확인**(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사무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

- (그 외 근로자) ①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를 말함

- (교육운영)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교육할 수 있고 특정 일에 편중하여 교육할 수도 있음
-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가능하며
 - 강의, 발표, 토의·토론, 세미나, 체험·실습 또는 작업 전 TBM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실시 가능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교육 특례)
 -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제7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사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제8항)

② 관리감독자

- (개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산안법 제16조)

□ (교육시간)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산업재해 발생**	무재해**	산업재해 발생**	무재해**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년*	16시간	8시간	8시간	4시간

○ (매년)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만 1년을 의미함

* 예시: '21.5.18. 지정된 관리감독자의 연간 기준은 '21.5.18. ~ '22.5.17

○ (무재해) 전년도에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산업재해: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 무재해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산업재해를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산업재해확인서를 확인(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확인)

□ (교육운영)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교육할 수 있고 특정 월에 편중하여 교육할 수도 있음

□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우편통신교육(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만 운영 가능함)으로 가능하며

○ 강의, 발표, 토의·토론, 세미나, 체험·실습 또는 작업 전 TBM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실시 가능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교육형태로 실시

○ (우편통신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교육방법	준수 사항
우편통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2 가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정기교육 특례)

-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사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자주 묻는 질문(FAQ)]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 근무장소 독립 여부, 업무 또는 직종이 사무직인지 여부, 정신적 근로인지 여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본 안내서 p.23 참고)
- ◇ 전년도 하반기에 개업하여 재해가 없는 사업장도 무재해 사업장인지
 - 무재해 사업장 교육 감면제도 취지에 맞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이어야함
- ◇ 무재해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확인(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 관리감독자도 근로자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 16시간)만 이수하면 됨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정기교육 대상임
- ◇ 정기교육을 일정 기간 단위(예: 매월)로 분할하여 받을수 있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해도 되는지
 - 가능하나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단위 정기 안전보건교육주기에 포함되기 전에 미리 해당하는 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안전교육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없도록 하여야함

□ 관리감독자의 정의

- 산안법 제1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 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음

□ 관리감독자의 강사 자격

- 관리감독자로 발령받아 최초근무하는 시점에 강사 자격 자동 부여
 - 사업주의 관리감독자 발령 행위자체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 관리감독자는 요구되는 자격(증)이 없으며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이 당연 부여됨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 토의, 세미나, 강의식교육, 현장 및 실습교육, 집체교육 등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후 그 내용을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
 - ① 관리감독자들이 모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기법 등을 세미나 또는 토의식으로 교육 진행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관리감독자 교육 방법)
 - ② 외부기관에서 전문화교육, 위탁교육 등을 받은 관리감독자가 교육받은 개정 법률, 정책방향, 우수기법 등에 대해 교육 후 부서별, 공정별 작업조건이나 작업특성 등에 적합한 정착 방안 논의나 토의
 - ③ 우수기법에 대해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다른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또는 실습교육이나 체험교육을 진행
 - ④ 사업 수행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보고하는 관리감독자 (예: 과장)와 상사나 동료 관리감독자간 위 ①과 같은 방법으로 토의 또는 논의
 - 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따른 강사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

-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년간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요구하는 교육시간을 충족하면 됨

일반검진 및 교육 실시 관련 사무직/기타직 구분

①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구분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음
 - (1)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 (2)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② 업무(직종)에 따른 구분

-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

- ☞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경우 그 주된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주로 수업 및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반교원의 경우는 사무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 이공계 실습 등 육체적인 근로를 주로 하는 실습교사나 기능강사는 비사무직 근로자(기타직)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

사무직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 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 전담상담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내근기자	○ 외근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 종사자 중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건축설계사, 제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 위의 기준으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2017.7.3.))를 참고하여 사무직과 비사무직(기타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임(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를 보고 판단)

* ILO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근거로 직업분류를 국내실태에 맞도록 표준화된 한국 표준직업분류를 제정.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구분	비고
1. 관리자 -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전문서비스 관리직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사무직 * 장소적 구분, 실제업무 등을 사무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기타직으로 구분함이 타당	○ 주된 업무가 사무실 내에서 행정·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직으로 분류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분류할 필요)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 사무종사자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금융 사무직 - 법률 및 감사 사무직 -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비사무직 (기타직)	
5. 판매 종사자 - 영업직 -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구분	비고
<p>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 숙련직 - 임업 숙련직 - 어업 숙련직 		
<p>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기타 기능 관련직 		
<p>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p>9. 단순노무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p>10. 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무직/비사무직(기타직) 구분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구분(사무직/비사무직)하여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건강검진)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 또한, 위의 구분방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련) 및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관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미준수에 따른 벌칙 적용시에는 근로자의 직종 구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근로자의 직종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다. 채용 시 교육

① 근로자

- (개요)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 (교육시간)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일반	6개월 이상 경력자*	일반	6개월 이상 경력자*
①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0.5시간	0.5시간	0.25시간
②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③ 그 외 근로자	8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채용 시 교육 특례)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을 받고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 면제

* (예시) '23. 10. 10.(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경우, (10.10.(화)~10.16.(월))의 채용 시 교육 면제, 10. 17.(화)에 동일한 업무 일용 근로계약 체결시 채용 시 교육 실시

[참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시 교육 여부 관련 행정해석

- ◇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 아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안전정책과-2946, '04.6.3)
- ◇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68307-10014, '01.2.9)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

□ (개요)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 (참고)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사업주가 기존의 근로자를 관리감독자로 새롭게 지정하였다고 하여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교육시간)

교육대상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일반	6개월 이상 경력자*	일반	6개월 이상 경력자*
관리감독자	8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2 나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 ◇ 채용 시 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함
- ◇ 특별교육을 실시하여도 채용 시 교육을 따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 ◇ 건설업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같은 사업장에서 1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교육시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 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과 결근의 의미가 없는 근로자를 의미함
 - 통상 근로계약이 일용 형태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기간, 일정 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상용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공사 진행기간, 일정 업무 수행기간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출근 여부를 정하여 구체적인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근로자

(개요)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교육시간)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①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0.5시간
② 그 외 근로자	2시간	1시간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

(개요)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교육시간)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관리감독자	2시간	1시간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2 다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마. 특별교육

※ 특별교육은 아래 4가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규모의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됨에 유의

❖ 특별교육이 제외되는 4가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기준)

- ①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②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 ③ 국제 및 외국기관
- ④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포함)

1 근로자

- (개요) 사업주(산안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를 포함)가 유해·위험한 작업(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39개 작업)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
- (교육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교육대상
- (교육시간)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①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②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8시간
③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가능하며

○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2 이상을 아래 교육형태로 실시

-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비대면 실시간 교육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2항제1호 다목)

-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작업명	교육내용
<p><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p><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압 장애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p>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 흡,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 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 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p>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등근톱 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갭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 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p> <p>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p> <p>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p> <p>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p> <p>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공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로봇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석면해체·제거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

- (교육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직접 수행하는 관리감독자가 교육대상
- (교육시간) 16시간(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가능하며
 -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2 이상을 아래 교육형태로 실시
 -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비대면 실시간 교육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의2 라목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2항제1호 다목)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작업명	교육내용
	<p>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p><개별내용>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p>	<p>근로자 특별교육 개별내용과 동일</p>

[자주 묻는 질문(FAQ)]

- ◇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16시간)이 2개인 경우 교육시간은
 - 2개의 작업에 대해 24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예시) 고압실 내 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통교육 8시간+고압실 내 작업(개별 8시간)+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8시간) 등 총 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 특별교육 대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2시간)이 2개인 경우 교육시간은
 - 2개의 작업에 대해 3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예시) 고압실 내 작업(공통 1시간+개별 1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1시간+개별 1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통교육 1시간+고압실 내 작업(개별 1시간)+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1시간) 등 총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16시간)과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2시간)이 각 1개인 경우 교육시간은
 - 2개의 작업에 대해 17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예시) 고압실 내 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1시간+개별 1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통교육 8시간+고압실 내 작업(개별 8시간)+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1시간) 등 총 17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16시간)이 3개인 경우, 최초 작업 전 교육시간은
 - 특별교육 16시간 중 1/4인 4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32시간의 1/4인 8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면 될 것임

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작업에 일정 기간 경력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 시간 요약표

대상 교육	면제 조건	면제 시간	근거 조항
정기교육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	교육시간 50%	시행규칙 제27조제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단, 입증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함)	참여 시간	시행규칙 제27조제②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5호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시행규칙 제27조제③
	사업주 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체험교육시간의 최대 2배	고시 제9조제④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이수 시간	고시 제9조제⑦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 인정	강의실시 시간	고시 제9조제⑧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이수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	1시간	고시 제9조제⑬
채용 시 교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 교육시간 50%	시행규칙 제27조제④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 면제	시행규칙 제27조제④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시간 50%	시행규칙 제27조제④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시간 50%	시행규칙 제27조제④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 면제	시행규칙 제27조제④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두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등이 해당 사업장의 사정으로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삭제
- ④ 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⑤⑥ 생략
- ⑦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 ⑧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⑨ 삭제
-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⑪~⑫ 삭제
- ⑬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 산안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는 언제 적용되는 조항인지
- (취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 및 작업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수급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답변) 도급인-수급인-근로자 등 3자 관계에서 도급인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의 변경이 없다면 채용 시 교육과 특별교육이 면제되는 것임
- ◇ 무재해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확인(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2 직무교육

- **(목적)** 사업주(기관장 포함)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확보
- **(내용)** 산안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등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교육(신규, 보수)을 실시해야 함
 - *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 안전검사기관, ⑤ 자율안전검사기관, ⑥ 석면조사기관
- **(방법)** 사업주는 직무교육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이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실시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미실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교육 미실시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교육 미실시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수강통지 및 등록)

- ① 직무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
- ② 직무교육기관은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 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해야 함
- ③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은 직무교육기관이 지정하는 교육등록 일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함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교육생은 교육연기 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이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직무교육기관에 제출(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

가. 신규교육

□ (교육시기)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

□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전문 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 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석면조사기관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p>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 검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보수교육

- (교육시기)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 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 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	교육내용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 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 ◇ 직무교육 대상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직무교육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 전문화교육

- (목적)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내용) 교육과정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험기계·기구, 작업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업무 분야별로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 (대상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안전검사원
- (수강신청 및 등록)
 - ①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문화 교육과정을 수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직무교육기관에 제출
 - 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려는 경우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 교육 희망 시기를 지정할 수 있음
 - ③ 전문화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직무교육에 준하여 실시
- (교재) 직무교육기관은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화교육 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사후관리) 직무교육기관이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①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 시 반영
 - ②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 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 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 시 반영
 - ③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라. 직무교육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3-63호)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 규칙 제3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영 별표 4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영 별표 6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목적) 사업주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과 및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교육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p.3)

- (내용) 산안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등록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

- (교육내용/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4시간 이상

교육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20만원	50만원

- (방법) 등록된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koshats.or.kr) - 고객지원 - 교육기관 등록현황

- (면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 **(목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고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고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내용)** 산안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등 9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는 특고에게 안전보건교육(①최초 노무 제공 시, ②특별)을 실시해야 함

- ①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고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기 전 실시
- ② **특별교육:** 유해·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교육운영)**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시행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가능하며
 -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2 이상을 아래 교육형태로 실시
 -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비대면 실시간 교육
- **(교육내용)** 특고노무수령자는 특고에게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
 - ①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 ③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교육과정	교육내용
최초 노무 제공 시	<p>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특별교육 내용과 같음(안내서 34쪽 참고)

(강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강사를 선임할 때는 영 별표10 제2호와 고시 별표1 제5호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함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교육시간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1항 [별표 4]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업시간 정의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제2조제7항 및 제8항

7.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 다만,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 시 교육시간의 1/2을 면제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면제

교육시간의 면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 따라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음

< 특수형태근로자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 >

구분	작업기간 및 경력	면제	교육시간	비고
1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2시간	
2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100	1시간	
3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50/100	1시간	
4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75/100	30분	
5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6	도급 사업장내에서 다시 종사하게 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공사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사기간이 짧고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30분 교육대상이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

* 6개월 이상이 자격취득 기준 94.4%, 경력관리 기준 96.1%

②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사고예방, 기계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교육 실시 (밑줄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적합한 교육)

1.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3.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건강진증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1.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교육방법)** 집체교육(전용의 교육시설),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 가능(시행규칙 제95조제3항)
- **(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www.safetyedu.net)에서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최초 노무 제공시 **30분용, 1시간용, 2시간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과정 운영중 → 수료증 발급
 - 이를 이수할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으로 인정** 가능
 -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기계(27종),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초노무제공 시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경력자/신규자/단기간·간헐적 작업자로 구분하여 30분/1시간/2시간** 과정을 운영중
- **(현장 주지 의무)**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리 등의 작업시 조치,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운행 경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주지시키거나 준수토록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지 또는 준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① 교육대상

-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기** 작업, 하역기계 5대 이상 작업 등
 - 건설사업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①굴착기 작업(2m 이상 굴착작업, 2m 이상 콘크리트 해체 또는 파괴작업 등), ②지게차 5대 이상 작업, ③천공기 작업(자주식에 한함)이 해당
 - ※ 하역기계(지게차 등) 5대 이상 작업 건설현장은 대형현장이 해당되나 하청업체에서도 소유하거나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적용되므로 대상현장은 극히 미미
 -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은 운전자가 근로자로서 종전법에서도 특별교육 적용대상

② 교육시간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다만,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시간의 **1/2을 면제**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 면제**

특별교육 시간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면제**

○ 따라서, 특별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음

< 특수형태근로자의 특별교육 시간 >

구분	작업기간 및 경력	면제	교육시간	비고
1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	0	16시간	채용시 4시간,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분할 실시 가능
2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50/100	8시간	
3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	0	2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
4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50/100	1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
5	도급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 대형 토목공사현장, 대형 지하터파기 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설현장의 특별교육 시간이 1시간에 해당하고,
 - 교육대상 건설기계도 주로 굴착기, 자주식 천공기에 불과하며,
 - 최대 16시간의 교육도 최초 작업투입 전 4시간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간 분할 실시가 가능하여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③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 공통사항 및 당해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작업시 안전 관리 사항으로 분류(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은 1/3까지만 인정되며, 2/3 이상은 집체교육이나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제2항제2호)
- (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www.safetyedu.net)에서는 건설기계 2시간/1시간 특별교육과정을 운영중 → 수료증 발급
 - 이를 이수할 경우 특별교육 일부(인터넷원격교육) 인정 가능

가. 연수교육

- (개요) 산안법 제146조에 따라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산안법 제14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등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 제외

-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및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협회
- (교육시간) 업무교육 시간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교육 구분		교육기간	비고
계		3개월 이상 (13주)	
업무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원)	기초과정	1주	지도사 직무수행을 위한 기초과정
	전문화과정	8주	지도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과정
실무수습(지도사협회)		4주	지도사 현장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수습

나. 보수교육

- (개요) 산안법 제145조에 따라 갱신등록하려는 지도사 중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지도하거나 종사한 실적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지도사가 갱신등록하려면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교육시간)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 시간을 합산하여 지도실적이 2년 미만은 20시간 이상, 2년~3년 미만은 10시간 이상

□ 개요

- ①산업안전보건교육, ②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③개인정보보호 교육, ④장애인인식개선교육, ⑤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가지 교육

□ 교육제도 안내

구분	근거 법률	대상	교육시간	강사자격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교육	본 안내서에 따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및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없음	500만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1~2회 (권고)	없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가능)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1. 사업주 또는 내부직원 직접 실시 2.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 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자	연1회 이상	퇴직연금 사업자	1천만원 이하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II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2.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
3.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4.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 ❖ 산안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산안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분류기준을 따르며,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확인 필요

①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 가능

② 통계청 자료를 통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_검색_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앞 두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대상 사업"명과 일치

↳ 예시)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75120 인력공급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업종으로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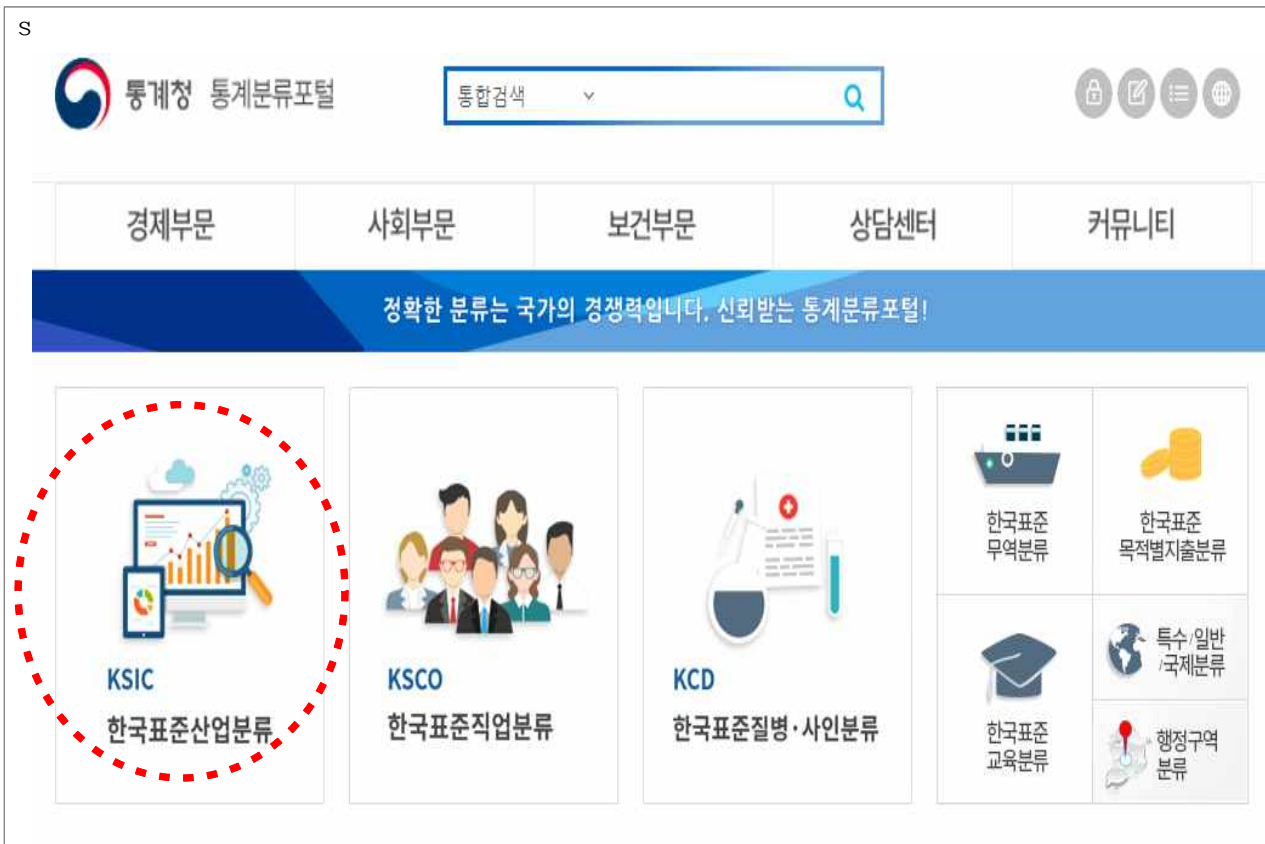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②에서 확인한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안법 시행령 별표1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접속 방법(http://kostat.go.kr)



1. 통계청 홈페이지 접속 후 통계분류포털 클릭



2.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통합검색

경제부문 사회부문 보건부문 상담센터 커뮤니티

정확한 분류는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신뢰받는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 KSIC

- 소개
- 검색**
 - 분류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 연계표
- 자료실

분류검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검색과 분류항목별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제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검색

■ 검색어 검색 시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복합어까지 검색됩니다.
■ 띄어쓰기 해야 할 검색어를 붙여쓰기할 경우, 붙여써야 할 검색어를 띄어쓰기할 경우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분류코드 검색 시 일치하는 코드만 검색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바로가기 주소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차수 09 구분 전체 조건 포함검색 검색어 검색

total : 0 Page : 1 / 1

번호	분류코드	색인어	대분류
검색조건을 선택해주세요			

3.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클릭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NameCode=001

분류내용보기(해설서)

■ 검색어 검색 시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복합어까지 검색됩니다.
■ 띄어쓰기 해야 할 검색어를 붙여쓰기할 경우, 붙여써야 할 검색어를 띄어쓰기할 경우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분류코드 검색 시 일치하는 코드만 검색됩니다.

차수 09 구분 전체 조건 포함검색 검색어 검색

한국표준산업분류

- A.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B.광업(05-08)
 -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금속 광업
 - 07.비금속광물 광업;연토층 제외
 - 08.광업 지원 서비스업
- C.제조업(10-33)
-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 F.건설업(41-42)
- G.도매 및 소매업(45-47)
- H.운수업(49-52)
- I.숙박 및 음식점업(55-56)
-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 K.금융 및 보험업(64-66)
- L.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O.항공행장, 국방 및 사회복지 행정(84)
- P.교육 서비스업(85)
-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S.협회 및 단체, 관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분류내용보기

차수	09	분류코드	B
분류명	광업 Mining and quarrying		
설명			
색인어			

출력 목록

4.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내용보기(해설서) 클릭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및 공단의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①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하단 팝업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클릭
- ② 표준산업분류번호(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확인
- ③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선택 >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입
- ④ 결과 확인

1.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 팝업존 “대상사업장 조회시스템” 클릭

2.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번호)를 알고있나요?
 예 / 아니오

3.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선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 5인 이상 50인 미만 / 50인 이상

4. 결과 확인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안전보건교육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아닙니다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번호): [입력란]
 뒤로 / 조회

참고 2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의 안전교육 대상조회 기능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

① 앱 다운로드 방법

- 안드로이드 : 구글 play 스토어 접속 > “위기탈출 안전보건” 검색
- IOS : App Store 접속 > “위기탈출 안전보건” 검색

②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접속 후 ‘안전교육 대상조회’ 버튼을 터치 후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등 정보 입력

③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1과 비교하여 최종 결과 안내

	
<p>①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다운로드</p>	<p>②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실행</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① 검색 키워드</p> <p>키워드(ex. 재배업) ▼</p> <hr/>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② 조회 결과(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 재배업 · 채소작물 재배업 · 콩나물 재배업 · 기타 작물 재배업 · ... </div> <div style="font-size: 2em; color: gray;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③ 대상 구분 결과</p> <p>귀 사업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입니다.</p> <p>(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경우 안 전보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p> </div> </div> <p style="margin-top: 10px;">(화면예시)</p>	
<p>③ 자가체크리스트 작성 후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p>	

2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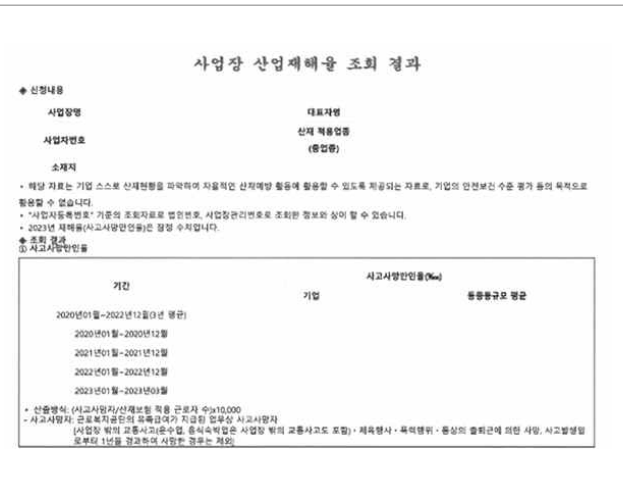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를 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전년도 무재해사업장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① 공단 사업장 산업재해를 조회 시스템(cert.kohsa.or.kr) 접속
- ② 산업재해율조회 클릭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④ 결과 확인



① 사업장 산업재해를 조회 시스템 접속

② 사업장 산업재해율조회 클릭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결과 확인

④ 결과 확인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각종 피해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례

-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 * 주로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등을 사칭하며 주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함
-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겠다고 설명하며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
- 사업장에서 교육을 요청하면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교육한 후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이수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대처 방법

- 사업장에 전화한 업체(또는 개인)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파일의 ① 교육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② 일치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기입된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확인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에서 찾을 수 있음
 - ↳ 산재예방/보상을 클릭하고, "교육"으로 검색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음
- 사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 행정정보공개 +
- 정책실명제 +
- 청렴정책공개 +
- 공공데이터개방 +
- 채불사업주 명단공개
- 법령정보 +
- 국고보조사업 +
- 재정정보공개 +
- 자산운용 +
- 고용노동통계 +
- 기타정보 +

사전정보 공표목록

고용노동부가 보유중인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전체	자주 찾는 정보	실업급여/고용서비스/고용보험
고용정책(총괄) 및 통계	근로기준/퇴직급여/자별개선	산재예방/산재보상	정년/여성
공통업무/운영지원	직업능력개발	고령자/장애인/사회적기업	노사협력/노사지원
공무원/공공기관 노사관계	기획/예산/법무/정보화	국제협력/홍보	감사

장애인일자리

고용노동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전체 | 안전보건교육 | 검색

총 : 2건

공표항목	공표내용	공표시기, 주기	공표형태	공표부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수시	일반	산재예방지원과 (044-202-7739)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공개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연 1회	PDF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5)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사칭 주의보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이제는 공단 홈페이지와 어플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사례 1

고용노동부(공단) 지정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00협회
홍길동입니다.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강사를 보내드릴 테니 바로 교육 받으세요.

사례 2

김철수 / 사업장 직원

OO안전교육기관이라면서 우리 사업장이 폭발해야
하는 법정교육이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외서는
안전교육은 10분만 하고 카드랑 보험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 사칭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공단 직원 사칭

* 2016.10.28.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공단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버전

- 1 공단 홈페이지 접속 → 하단 팝업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 클릭
- 2 우측 상단 안전보건 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 클릭 후 교육기관명 입력
- 3 교육기관이 검색될 시 → 연락처 확인 후 진행
- 4 교육기관이 검색 안 될 시 → 교육진행 X

*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시 법정 교육시간 인정 안 됨



APP버전

- 1 공단 APP(안전보건공단) 접속 → 우측 하단 안전교육 대상조회 클릭
- 2 우측 하단 안전보건 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 클릭 후 교육기관명 입력
- 3 교육기관이 검색 될 시 → 연락처 확인 후 진행
- 4 교육기관이 검색 안 될 시 → 교육진행 X

*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시 법정 교육시간 인정 안 됨



안전보건교육 문의처_안전보건공단 교육센터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권역	02-6711-2913 / 02-6711-2914	인천권역	032-510-0646 / 032-510-0647
부산권역	051-520-0557 / 051-520-0555	대구권역	053-609-0570 / 053-609-0574
대전권역	042-620-5673 / 042-620-5676	광주권역	062-949-8714 / 062-949-8718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

중대재해
사이렌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
(예: 보험, 상품서비스 등)을 하는 피해사례 다수 발생**

사례 1)

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하였거나 안전보건교육 적용 제외 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이 개정되어 **사업장마다 보수교육 1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지사 직원이 방문하여 무료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안내**

사례 2)

'24년에 적용되는 중대법 관련 추가 업종 사업장에 해당되어 **계도 대상에 선정되었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며, 꼭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안내**

반드시 확인

- ①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 ② 전화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

①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하단 팝업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클릭
-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및 상시근로자 수 입력 후 결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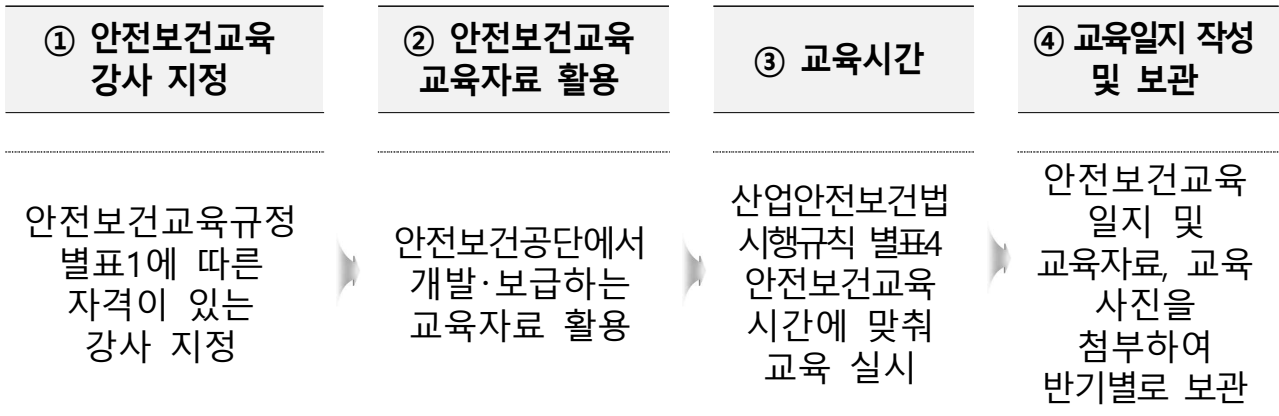
②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확인

*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4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강사 지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63호) [별표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제3조의2, 제10조, 제15조 관련)

1.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4.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 안전보건교육 교육자료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 (교재 및 교안)를 작성하여 교육 실시
- 아울러, 사업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보급하는 책자 등 인쇄물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양한 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_자료마당_통합자료실_안전보건자료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동 안내서 6~46p 참고

□ 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

- (인정 범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장교육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에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을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며,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참여한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 (교육 일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일지 및 양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교육실시 여부를 서류나 전산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사내 강사 무료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장 자체 교육 시 자체적으로 교육 추진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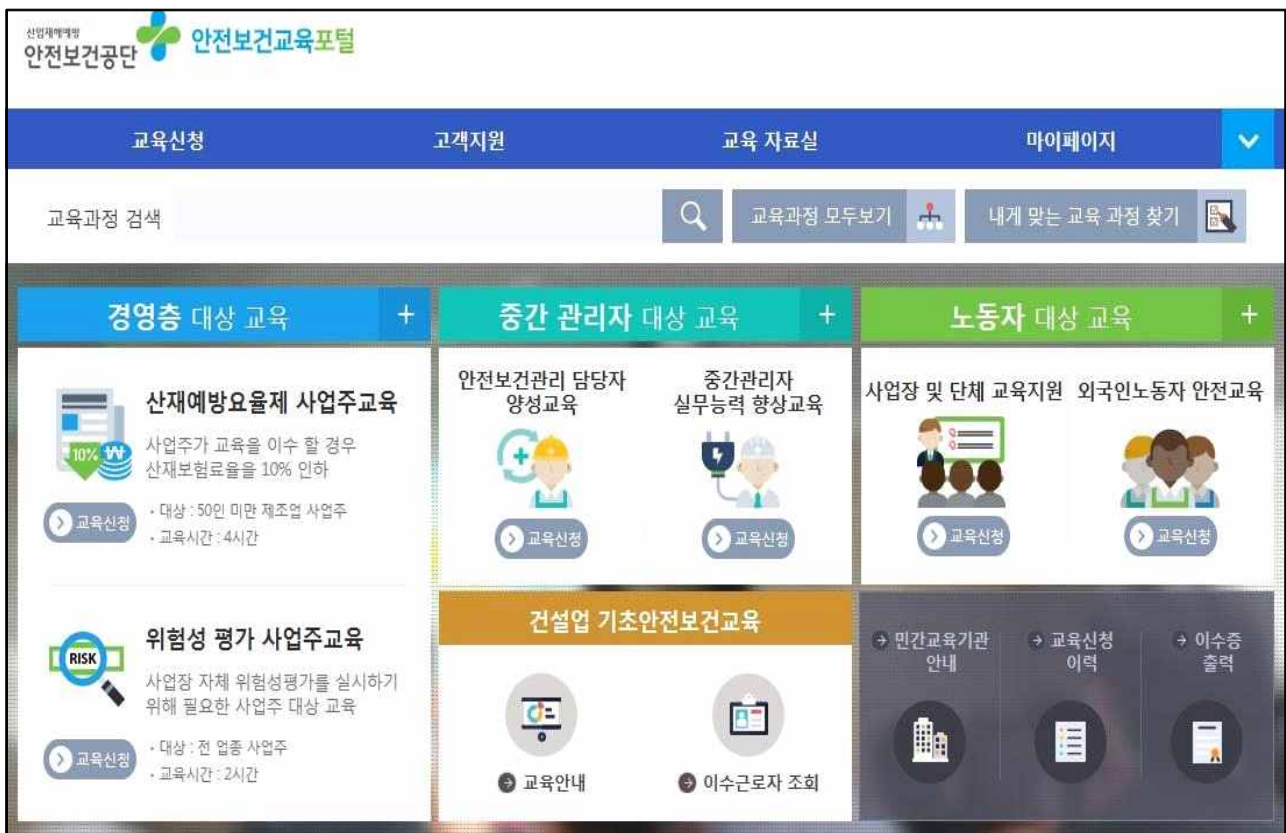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하며 사업장별 규모, 지원횟수, 공단 자체 일정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 해당분야 전문강사가 현장방문 교육 지원
- 업종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 사례 중심 교육(1~2시간)

○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http://www.koshats.or.kr>)에서 교육 신청



□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예시)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교육 담당	검 토	대표 이사
작성일자 : 20 작성자 :							
교육 구분	가. 정기교육 다. 작업내용 마.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바. 기타()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별표4]참조							
교육 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교육 과목							
교육 내용							
교육 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장소			비고	
특기 사항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NO	직 책	성 명	서 명	NO	직 책	성 명	서 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교육사진>

<사진1>

<사진2>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Ⅲ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2. 직무교육기관
3.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제도 및 현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 (등록 관련 법령) 산안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10,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내용) 산안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인력·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교육과정 개설) 사업주 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 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이 교육과정 개설·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1. (교육방법) 교육형태 중 다음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 *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④ 비대면 실시간교육, ⑤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 안전보건교육 준수 사항 >

교육방법	준수 사항
현장교육 (안전보건교육 규정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 ■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
인터넷 원격교육 (안전보건교육 규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 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붙임 <참고1> 참조 ■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교육(모바일교육) 시 다음 항목을 준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실시 전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 금지 내용을 공지 후 확인 -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 -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원격교육 수강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교육으로 재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안전보건교육 규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2제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

**우편통신교육
(안전보건교육
규정 제7조)**

-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2. (교육내용) 사업주 등은 근로자들에게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5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내용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교육 실시

- ①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 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 ③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단기간 작업(2개월), 간헐적 작업(60일) 작업인 경우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 (교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함
- (실적제출)** 전년도 교육수행 실적을 고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20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강사)**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아래와 같음(영 별표10 제2호와 고시 별표1 제5호)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제2호 인력기준 해당자)

- 1)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사
-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3)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5)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6) 5급 이상 공무원 근무 중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7)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8) 산업안전·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9)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10)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11)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12) 7급 이상 공무원 근무 중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13)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14)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자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23-63호 「별표1」 제5호)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 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반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 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로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관련 분야의 범위
 -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

- 가.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사
 -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3)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나.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1) 가목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산업안전·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4)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6)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7)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8)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추 것

4. 제조업, 건설업, 기타 사업(제조업·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각각 1개 이상 보유할 것

- (법령) 산안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산안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별표12,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내용) 산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이하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교육과정 개설)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교육방법) 교육형태* 중 다음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해야 함

*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④ 비대면 실시간교육
 2. (교육내용) 규칙 별표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 직무교육기관이 정하여야 함
 3.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함
- (직무교육기관의 운영)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안전보건교육규정 제18조)

-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 등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직무교육과정(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의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 실시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제19조의5에 따른 직무교육센터(이하 "직무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직무교육과정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실시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연간 교육일정을 직무교육센터에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센터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 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직무교육센터에 입력 해야 함
- ⑦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실적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의3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강사) 영 별표 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1 제5호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함

※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

□ **직무교육기관 강사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 제2호 인력기준 해당자)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자격**(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23-63호 「별표1」 제5호)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직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반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명)]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해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직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 3) 안전검사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구분	교육대상	관련 분야
총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산업 안전	3) 안전관리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산업안전
산업 보건	6) 보건관리자 7)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8)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산업보건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관련 분야는 산업보건 분야 중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한다.
안전 검사	9)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10)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

나. 인력별 기준

구 분	자격기준
총괄 책임자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강사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3. 시설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m²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m²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교육대상별 장비 기준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회전속도측정기	1
2) 온도계측기(표면온도 측정용일 것)	1
3) 소음측정기	1
4) 절연저항측정기	1
5) 접지저항측정기	1
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7) 클램프미터	1
8) 검전기(저·고·특고압용일 것)	1
9)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나.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화학적 인자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2) 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3) 소음측정기	1
4) 습구·흑구온도지수(WBGT)의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1
5) 검지관 등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6)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7) 청력검사기	1
8)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스모크테스터	1
9)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1
10) 심폐소생 인체모형	1
11) 혈압계	1
12)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13)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장비명	수량(대)
1) 절연저항측정기	1
2) 접지저항측정기	1
3) 클램프미터	1
4) 검전기(저·고·특고압용일 것)	1
5) 소음측정기	1
6) 검지관 등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7)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8) 심폐소생 인체모형	1
9) 혈압계	1
10)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11)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라.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지역시료 채취펌프	1
2) 유량보정계	1
3) 입체현미경	1
4) 편광현미경	1

5) 위상차현미경	1
6) 흡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일 것]	1
7)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일 것]	1
8) 아세톤 증기화 장치	1
9) 필터 여과추출장치	1
10)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mg 이하이어야 한다)	1
11)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일 것),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 { 분진·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 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일 것]	1

마.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회전속도측정기	1
2) 비파괴시험장비	1
3) 와이어로프 테스터	1
4) 진동측정기	1
5) 초음파 두께측정기	1
6) 토크메타	1
7) 로드셀, 분동	1
8) 온도계측기(표면측정용일 것)	1
9) 소음측정기	1
10) 절연저항측정기	1
11) 접지저항측정기	1
12) 정전기전압측정기	1
13) 클램프미터	1
14) 검전기(저·고·특고압용일 것)	1
1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도농도의 측정이 가능할 것)	1

3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제도 및 현황

- 고용노동부는 내실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①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 및 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과정을 운영 중
 - 사업주는 동 안전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교육 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3-63호) 제9조제4항
 - 사업주는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가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두어야 함

가. 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장

- 설치현황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기관	연락처
1	중부 안전체험교육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본부	032-510-0642
2	담양 안전체험교육장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병목로 2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061-383-8294
3	경남 안전체험교육장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454번길10-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	051-520-0556
4	경북 안전체험교육장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길 1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시본부	053-609-0573
5	충청 안전체험교육장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금벽로 1714-7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시본부	042-620-5672
6	제천 안전체험교육장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광역시본부	043-645-6805~6
7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1029-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061-685-9421~7

- (이용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휴관일 : 공휴일, 공단이 정한 휴일)
 - * 중부·경남·경북·충청 체험교육장은 시설개선으로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이용방법) 인터넷 사전예약(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 (교육과정) 근로자 및 일반인대상 안전시설체험 및 가상안전체험(4시간)

* 교육시간은 교육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교육비) 무료

나.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인정 안전체험교육장

□ 설치현황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 기관	연락 처	이용시간	이용방법	교육 과정	이용료
1	울산안전 체험관	울산시 북구 산하중앙 2로 87-33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052-279-6588 ~9	화~금요일, 10:00~16:00 (휴관: 신정, 설날, 추석 당일)	홈페이지 (http://fire.ulsan.go.kr/safety/)	근로자 대상 체험 교육 과정 (2시간)	유료 개인 (3천원) 울산 시민 (2천원)
2	엣스퍼트 안전 체험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5 (공덕동) LG마포빌딩 6층 엣스퍼트 TL센터	(주)에스앤아이 코퍼레이션	02-6924-5695	월~금요일, 8:30~17:30 (휴관: 4월 2주 금요일)	홈페이지 (http://forms.gle/cFDtrbLcSqVKkjR47)	건물 관리업 근로자 대상 체험교육 과정 (4시간)	유료 인/ 100천원
3	한라 시멘트 안전 교육 센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길 225 (본관동 1층)	한라 시멘트 (주)	033-530-1752, 1755	월~금요일 8:00~17:00 (휴관: 공휴일, 회사 지정 휴일)	유선문의 후 팩스접수 (팩스: 033-530-1987)	근로자 및 학생 대상 체험 교육 과정 (2~3 시간)	유료 인/ 30천원 ~ 50천원
4	평택 안전체험 교육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2	한국 서부 발전(주) 팽택 발전본부	070-5007-5041	월~금요일, 9:00~17:00 (휴관: 공휴일, 4·7월 1주 금요일 및 회사 지정 휴일)	홈페이지 (http://www.iwest.co.kr) (한국서부 발전 홈페이지 > 소통광장 > 안전 체험장 신청)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 교육 과정 (2시간)	무료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 기관	연락 처	이용시간	이용방법	교육 과정	이용료
5	LGD파주 안전학교 체험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 (LG 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내)	엘지 디스플레이 (주)	031-933-0668	월~금요일 8:30 ~ 17:30 (월 4회 휴관: 주말 및 회사 지정 휴일)	전자메일 (osj407@gdisplay.com)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체험 교육 과정 (2~4 시간)	무료
6	안전체험 교육장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서로 239번길 45-91	한국 안전 체험 교육원 협동 조합	031-8077-2641	월~금요일 8:00 ~ 17:00 (휴관 : 주말 및 공휴일)	유선 혹은 팩스 (팩스 : 031-8077-2651)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체험 교육 과정 (38시간)	유료 근로자 80 천원, 관리 감독자 (150 천원)
7	LG U+ 안전 체험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가정동) LG U+ 대전R&D 센터	(주)엘지유플러스	-	월~금요일 9:00~17:0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전자메일 (nwsafety@lguplus.co.kr 및 dankim79@lguplus.co.kr)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체험 교육 과정 (2-3-4 시간)	유료 인/50 천원
8	kt service 남부 안전 체험 교육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괴정동, KT인재개발원) 제1실습관 3층	주식회사 케이티 서비스 남부	042-479-3253	월~금요일 9:00~18:0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홈페이지 (hrd.ktservice.net) 문의 후 전자메일 제출 (hrd@ktservice.net)	체험 교육 과정 (5시간) *안전 체험 3시간, 통신 주등주 체험 2시간	유료 인/76 천원
9	종합 안전 체험 교육장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57, 태안발전본부 내	한국서부발전 (주) 태안발전본부	070-5007-3115	월~목요일 9:30~16:3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홈페이지 (http://www.iwest.co.kr)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소통 광장>안전 체험장 신청)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 교육 과정 (2시간)	무료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 기관	연락 처	이용시간	이용방법	교육 과정	이용료
10	생산 기술원 안전 체험장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222(청호리 19-1), 엘지 전자 생산 기술원	엘지 전자 (주)	031- 8054- 3273	월~금요일, 8:00~17:0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전자메일 (seungwo n.jung@ lge.com)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 교육 과정 (3시간)	무료
11	SHE 체험 교육관 (청주 캠퍼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37 (향정동)	에스 케이 하이 닉스 (주)	043- 907- 2450	월~금요일, 9:00~17:3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전자메일 (jiyung.se o@sk.co m 및 참조 juyeon.an @sk.com) 또는 팩스 (팩스 : 031- 645- 8049)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 교육 과정 (23시간)	무료
12	LGD 구미 안전 학교 체험관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2로 235 (진평동, LG 디스 플레이 내)	엘지 디스플 레이 (주) 구미 공장	054- 717- 0988	월~금요일, 8:30~17:3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전자메일 (hoewon.y un@lgdisp lay.com)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체험 교육 과정 (24시간)	무료
13	롯데하이 마트 VR 안전 체험 교육장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533번길 8	롯데 하이 마트 (주)	02- 2050- 5373	월~금요일, 9:30~17:0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유선문의 (02- 2050- 5373)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 교육 과정 (3.3.5 시간)	유료 인/ 20천원 ~ 30천원
14	한국남부 발전(주) 안전문화 교육관	경남 하동군 금성면 경제 산업로 509 (하동발전 본부 내)	한국 남부 발전 (주) 하동 빛드림 본부	070- 7713- 1046	월~금요일, 09:30~17:3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유선문의 (070- 7713- 1046)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 교육 과정 (42시간)	무료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 기관	연락 처	이용시간	이용방법	교육 과정	이용료
15	안전체험 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106(대덕연구소내)	DL이앤 씨(주)	042-862-4410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과정 (1박 2일 과정, 4시간과정)	유선문의 (042-862-4410)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과정 (1박 2일 과정, 4시간 과정)	무료
16	한울 산업안전교육장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040 한울원자력 본부 재난환경부	한국수력 원자력(주)	054-785-2983	월~금요일 09:30~17:00 (휴관·주말·공휴일·및회사지정휴일)	사내 인트라넷 및 이메일 접수, 현장접수 및 유선접수 (일반관람객에 한함)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과정 (2,3시간)	무료
17	SECL 안전체험관	서울 강동구 상일로6길 26 CEC C동 1층	삼성엔지니어링(주)	02-2053-6970	월~금요일 08:00~12:00 (코로나19상황에따라조정 가능)	안전보건팀 유선 협의 후 신청	삼성엔지니어링 전 임직원 (추후 기타 협력사, 유관 기관 학생 등 실시 예정)	무료
18	평택 환경안전체험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삼성로 144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031-8094-9752	주3일 3,4시간 특별교육	사내 시스템 및 유선문의 (031-6191-9752)	삼성전자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우선 추진 (기타추후협의)	무료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기관	연락처	이용시간	이용방법	교육과정	이용료
19	안전문화체험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19길 12-2	현대건설 (주)	02- 2163- 0926	월~금요일 08:00~17:00 (휴관:주말,공 휴일및회사지 정휴일)	사내교육 : HSE지원실 교육일정에 의거 분부별 입과 신청 외부교육기 술교육원홈 페이지통해 신청 (edu.hdec.c o.kr)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 육과정 (3.5시간)	유료 인/2만6 천원
20	경기도국민 안전체험관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22	경기도국 민안전체 험관	031- 288- 1004	화 목 주2일 10:00~12:00 (휴관:매주월 요일1/1,설추 석연휴)	홈페이지 (https://ggs ec.gg.go.kr)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 육과정 (2시간)	무료
21	Safety Academy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7	삼성물산 (주)	070- 7110- 9879	월 수 금 08:00~12:00 (공휴일등제 외)	유선문의 (070- 7110- 9879)	산업안 전분야 체험교 육과정 (3시간)	무료
22	현대중공업 안전체험교 육장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 도로 100(전하동)	현대중공 업	052- 202- 5415	평일 08:00~17:00 (휴관:주말,공 휴일하계휴 가기간)	유선문의 (052- 202- 5415)	근로자 채용 시 교육 과정 (8시간)	무료
23	GS건설 안전혁신학 교	경기 용인시 처안구 이동읍 덕성산단2로 6번길 29	GS건설(주)	031- 329- 4804	월~금요일 09:00~17:00 (휴관:주말,공 휴일및회사지 정휴일)	유선문의 (031- 329- 4804)	맞춤형 체험교 육과정 운영 (1~4 시간)	5천원/1 인1시간 (최소 20명), 체험 시설 임대료 30만원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기관	연락처	이용시간	이용방법	교육과정	이용료
24	KEPCO안전 체험교육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6번길 43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 부	한국전력 공사 부산울산 본부	051- 604- 5347	월~금요일 09:00~18:00 (휴관:공휴일 및 회사지정 휴일)	유선문의 (051- 604- 5347)	맞춤형 체험교 육과정 운영 (최대 3시간)	무료
25	SAIT Safety Playground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30번지	삼성전자 (주) 종합기술 원	031- 8061- 1699	매주 화/목 14:00~17:00	홈페이지(삼 성전자 사내시스템) 및 유선협의 후 별도신청 전자메일 harin.han@ samsung.c om, hj7952.park @samsung. com)	근로자 환경안 전 체험교 육(정기 교육) (3시간)	무료
26	항만안전체 험관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26번 길 251	한국항만 연수원 부산연수 원	051- 718- 0814	월 2회 실사(연간 교육일정 지정)	유선문의 (051-718- 0814)	근로자 및 관리감 독자 안전보 건교육(정기교 육) (8시간)	150천원 /1인당
27	LG마그나 안전체험교 육장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322(경서동, 엘지전자 인천캠퍼스)	엘지마그 나 이파워트 레인주식 회사	032- 723- 1814	월~금 09:00~17:00 (휴관:주말및 공휴일)	유선문의 혹은 전자메일 (T:032- 723- 1814 E:eunkyun g98.park @lgmagn a.com,fro ntier.kim @lgmagn a.com)	사내외 체험교 육희망 자 (최대 4시간)	무료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 기관	연락 처	이용시간	이용방법	교육 과정	이용료
28	공정안전체 험교육원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2길 13번지	시스템코 리아인증 원(주)	02- 838- 9002	1,3주 화 수	E-MAIL(koji ngyu@sok or.kr) 또는 팩스접수(02 -897-9007), 추후 온라인 시스템 구축예정	근로자 및 관리감 독자 정기교 육 특별안 전보건 교육(체 험교육 2~3시간)	과정별 상이 (근로자 정기교 육3시간 8만원/ 인관리 감독자 정기교 육8시간 15만원/ 인공정 안전체 험교육4 시간15 ~20만 원/인등)
29	KOGAS 안전체험교 육장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8로 60	한국가스 공사 당진기지 안전건설 단	041- 359- 5523	월~목요일 9:00~16:00 (휴관:공휴일 및공사지정휴 일)	유선문의	건설현장 근로자 체험교육 (120분)	무료
30	당진발전본 부 체험식안전 교육장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0	한국동서 발전(주) 당진발전 본부	070- 5000- 2765	화~목 13:30~15:30 (휴관:주말및 공휴일)	유선문의	본부 및 협력사 교육수 요 후 '24년 하반기 외부 인원 수용 예정	무료
31	SK텔레콤 안전체험교 육관	대전 중구 보문로 82(부사동) SK텔레콤 부사사옥 내	에스케이 텔레콤(주)	042- 330- 5445	월~금 09:30~18:00 (휴관:법정공 휴일및회사지 정휴일)	전자메일 (yonggeun. oh@sk.com)	내외부 관계자 및 협력사(3 4/8시간) 체험교 육을 희망하 는 회사 및 일반인(3 시간)	회사 110,000 원/인 일반인 무료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 기관	연락 처	이용시간	이용방법	교육 과정	이용료
32	안전체험교육관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42, 3층	(주)케이티 서비스 북부	02-750-0732	월~금 09:00, 14:00 1일 2회 운영 (휴관 :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회사지정휴일)	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확인 후 전화 또는 E-mail 신청 (http://www.ktservice.co.kr >홍보센터>안전체험 safety_first@ktservice.co.kr)	정보통신산업장근로자 및 일반인 교육과정(3.3시간 2.3시간)	120,000 원/인

※ 교육비 : 인정 교육장별로 교육비가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관련 Q&A

IV

'24.1.1. 기준으로 수정

1. 총괄

- 1-1. 교육 대상 관련 사항
- 1-2. 교육 방법 관련 사항
- 1-3. 기타(교육내용, 강사, 증빙 등)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2-1. 정기교육 관련 사항
- 2-2. 채용 시 교육 관련 사항
- 2-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관련 사항
- 2-4. 특별교육 관련 사항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4. 직무교육

5. 안전보건교육기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1. 총괄

1-1. 교육 대상 관련 사항

- (질의1-1-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새우양식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이 면제되는지?
- (질의1-1-2) 판매직, 의류잡화 제조 등의 일부 직원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인지?
- (질의1-1-3)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문화사업을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 (질의1-1-4) ○ 당사의 본사조직(제조업 본사)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 영업팀 근로자가 사무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본사조직 내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팀에게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 (질의1-1-5) 현장 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 (질의1-1-6) 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 (질의1-1-7)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 (질의1-1-8) 운영사 변경으로 인해 설비와 공정에 변함없이 근로자 모두가 A사에서 B사로 고용 승계된 경우에도 특별교육을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 (질의1-1-9) 사용사업주와 파견업체와의 협의(계약 등)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파견업체에서 시행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파견해 줄 경우 파견법의 취지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지?

1-2. 교육 방법 관련 사항

- (질의1-2-1) ○ 인터넷 원격교육 본인인증 시 휴대폰, 공동인증서 확인 외 아이핀 인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 본인인증이 어려운 학습자의 경우 전화 연결하여 성함,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인증할 수 있는지?
○ 가족 명의 휴대폰 소지 근로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가족관계확인서 양식에 명의자 서명을 받는다면 본인인증이 가능한지?
- (질의1-2-2)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에서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의미인지?

(질의1-2-3)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에서 '교육 수강을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은 어떤 의미인지?

(질의1-2-4)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에서 '동시접속방지기능'은 어떤 의미인지?

(질의1-2-5) 인터넷 원격교육 시 순수 12시간(6시간)의 동영상 자료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1-2-6)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에서 과정과 과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1-2-7) 안전보건교육 운영기간을 학교 운영 단위(또는 회계연도)로 적용가능한지 여부는?

1-3. 기타(교육내용, 강사, 증빙 등)

(질의1-3-1)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교육과목에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교육내용 일부가 빠져있어도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1-3-2)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중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1-3-3) 시행령 별표 10 2호나목6)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분야라는 것에 대학교 교수로서 시스템공학을 가르치는 업무로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해당하는지?

(질의1-3-4) 교육기관에서 지정인력 외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력을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1-3-5)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중 경력이 지정등록된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니지만 강의한 경력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1-3-6) 직무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기본인력인 총괄책임자, 강사는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는지?

(질의1-3-7)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1-3-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2호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분야"의 의미는?

(질의1-3-9) 의사 또는 간호사가 진행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질의1-3-10)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강사로서 다른 관리감독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1-3-11) ① 안전보건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1-3-12)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질의1-3-13) 근로자가 컴퓨터가 없다는 사유로 안전보건교육(인터넷 원격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질의1-3-14) 수급사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도급사 직원이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1-3-15)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각각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 교육 미실시에 대한 책임 여부는?

(질의1-3-16)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1. 정기교육 관련 사항

(질의2-1-1) 안전·보건관리자가 직무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해에는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2-1-2) 안전·보건관리자가 교육계획의 수립, 준비 강의, 진행 등을 진행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지?

(질의2-1-3)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2-1-4) 고소위험공정작업에 따른 특별교육을 2시간 이수한 근로자는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2-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교육을 작업 시작 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2-1-6) 근로자 정기교육은 작업 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 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질의2-1-7) ○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가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에서 해야 하는지?

- 안전보건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 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실시 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2-2. 채용 시 교육 관련 사항

(질의2-2-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도급사가 하는 것이 적법한지?

- 장비를 임대하고, 현장에서 조종사를 채용할 경우 교육 의무 주체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기관이 있는지, 도급사에서 시켜도 되는지?

(질의2-2-2) ○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계속 고용 기준의 기간(한달이상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 행정 해석에서 말하는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라고

인정되는지?

- 계속 고용기준 충족기준 및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라면, 일용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2-2-3)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 시 교육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고용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질의2-2-4) 근로자가 A 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 내의 B 협력회사에서 작업 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질의2-2-5)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채용 시 교육(8시간)을 실시해야 하는지?

2-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관련 사항

(질의2-3-1)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 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사무직 인원이 과거 투입된 해당 직무의 직무전환교육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후 또다시 파업으로 인해 해당 직무로 투입되는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직무전환교육은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질의2-3-2) ① 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② “A”라는 구역에서 운반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③ 동일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질의2-3-3) A 공정 → B 공정 순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로테이션이 돌아올 때마다 작업내용 변경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2-4. 특별교육 관련 사항

(질의2-4-1) A, B, C, D 사업장에 약품을 납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차주)의 특별 교육 실시 주체는 어디인지?

(질의2-4-2)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5대의 판단기준은?

(질의2-4-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에서 2미터의 기준은?

(질의2-4-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질의2-4-5) 하역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 특별안전교육 중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 (질의2-4-6) 단순히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도 특별교육 대상인지?
- (질의2-4-7) 품질분석 업무를 위해 방사선 물질이 장치되어 있는 분석기에 넣어 분석/실험하는 작업은 실험용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4-8) 병원에서 병원체의 진단·검사·관독을 위해 사용하는 인화성 물질은 시험 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질의2-4-9) 특별교육 대상 물질을 소량 사용하는 경우도 취급으로 보는지?
- (질의2-4-10) LPG-산소 용접장치를 반입하여 대차를 통해 이동하며 용단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2-4-11) 산업용 로봇이 밀폐된 장부 내부에 이고 신체와 간섭이 없으며 유지·보수 작업 시에도 원격으로 진행하는 경우 특별교육 대상인지?
- (질의2-4-12) 동바리가 없는 낮은 높이의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한 거푸집을 취급하는 경우 특별교육 대상인지?
- (질의2-4-13) 시험연구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며 조직의 고정 및 조직(검체) 살균, 소독으로 사용되는 포르말린(CAS No 50-00-0)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 (질의2-4-14) 밀폐공간에 대한 청소를 용역을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폐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2-4-15)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 1반 2대, 가공 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 의무 여부
- (질의2-4-16) 사용 및 운전, 보전 등과 같은 작업 없이 육안점검 등과 같이 직접적인 작업이 아닌 경우 '취급'으로 보지 않고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질의2-4-17)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 (질의2-4-18) ○ 같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이 2년 가량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마다 특별교육을 해야 하는지?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관하여 같은 종류의 작업은 해당 작업팀을 묶어서 최초 2시간을 실시하고 그 후에 작업에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2-4-19) ○ 근로자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60일 이내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시간을 추가적으로 이수하면 되는지?
○ 추가된 교육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 (질의2-4-20) 작업 시 락카 사용시간이 1년에 총 30분 정도라면 간헐적 작업으로 보고 특별교육을 2시간만 실시하여도 되는지?

- (질의2-4-21)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특별교육을 재실시해야 하는지?
- (질의2-4-22)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 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4-23) ○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교육을 한 때에는 신규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 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 (질의2-4-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습니다.
- 반대의 경우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특별교육 공통부분 8시간은 같음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2-4-2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 (질의2-4-2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작업 이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특별교육을 시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같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교육 대상 직종의 정확한 구분은?
- (질의2-4-27) ① 근로자가 다른 곳으로 이직 후 1년 이내 동일한 특별교육대상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50% 면제가 되어 8시간만 교육받아도 되는지?
- ② 특별교육 50% 면제를 받더라도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는지?
- ③ 간헐적 작업이거나 단기간 작업은 특별교육을 2시간만 해도 되는지?
- ④ 일용직 근로자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인 작업을 3달에 걸쳐 진행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만 하면 되는지?
- ⑤ ④번의 경우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는지?
- (질의2-4-28) ○ 산안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호에 따른 같은 도급인 사업장 내 소속 사업장 변경의 의미
- A 현장(서울) 'ㄱ' 협력회사(수급인)에서 동일 현장 'ㄴ' 협력회사(수급인)로 이직한 경우인지?
 - A 현장(서울) 'ㄱ' 협력회사에서 B 현장(경기도) 'ㄷ' 협력회사로 이직한 경우인지?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질의3-1) ①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질의3-2)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 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 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3-3) 관리감독자가 12월 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 31일 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

(질의3-4) 관리감독자가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될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16H)을 새로 수강해야 하는지?

(질의3-5) 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②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질의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비고에 따른 내용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도 적용되는지?

(질의3-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질의3-8)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 후,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경우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3-9)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여러 개인 경우, 관리감독자는 여러 개에 대한 특별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는지?

4. 직무교육

(질의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인지?

(질의4-2) 계열사인 A와 B 사업장에 관리책임자로 동시에 선임되었을 경우 관리책임자 교육을 1회만 받으면 되는지?

(질의4-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를 단순히 동일 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와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유지가 되는지

(질의4-4)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의사나 간호사들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에 따라 2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질의4-5) ○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 기준 확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이수하게 된 해당 분기, 해당 연도, 직무교육 주기 전체 등 3가지 경우 중 적용하게 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질의4-6) 시행규칙 개정 이후 보수교육 주기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5. 안전보건교육기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질의5-1)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질의5-2)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사무실과 강의실이 떨어져 있는 것은 가능한지?

(질의5-3) "시설 및 장비"는 전용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5-4)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의실 면적이 117.9제곱미터의 강의실을 가지며 12제곱미터의 면적의 강의접수, 커피 등 다과를 먹을 수 있는 곳을 포함한다면 가능한지?

(질의5-5)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 시 같은 건물에 층을 달리하여 강의실을 2개로 하여 면적의 합을 120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지?

(질의5-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등록된 사무실을 위탁교육기관의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5-7) 안전보건교육 교육장을 한 달에 5일 정도 사용하고 있어 나머지 25일을 대관, 다른 교육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5-8)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5-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위탁기관을 등록 시, 기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5-1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석면조사 등과 회사의 형태 또는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와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인지 후인지?

(질의5-11)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 ① 신규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②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③ 신규근로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1 총괄

1-1. 교육 대상 관련 사항

1-1-1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새우양식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라 어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되나, "특별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1-1-2

- 판매직, 의류잡화 제조 등의 일부 직원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인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아목에 따른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되나, "특별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1-1-3

-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문화사업을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파목에 따른 협회 및 단체로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되나, "특별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1-1-4

- 당사의 본사조직(제조업 본사)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 영업팀 근로자가 사무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본사조직 내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팀에게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 영업팀에 소속된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대분류에 따른 ‘판매종사자(분류코드: 5)에 해당하면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사무직으로 볼 수 없고, 귀하의 사업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귀하의 사업장(본사조직)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적용된다면, 본사조직 내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1-1-5

- 현장 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1-1-6

- 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훈련 중인 자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1-1-7

-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 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1-1-8

- 운영사 변경으로 인해 설비와 공정에 변함없이 근로자 모두가 A사에서 B사로 고용 승계된 경우에도 특별교육을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작업환경, 공정의 특성, 보유 시설·장비 등에 변함이 없고, 단순히 운영사 변경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이 고용 승계되는 경우라면 특별교육을 다시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1-1-9.....•

- 사용사업주와 파견업체와의 협의(계약 등)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파견업체에서 시행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파견해 줄 경우 파견법의 취지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지?

답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은 사업장의 작업환경, 작업내용 및 공정특성 등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적법한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1-2. 교육 방법 관련 사항

1-2-1

- 인터넷 원격교육 본인인증 시 휴대폰, 공동인증서 확인 외 아이핀 인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 본인인증이 어려운 학습자의 경우 전화 연결하여 성함,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인증할 수 있는지?
- 가족 명의 휴대폰 소지 근로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가족관계확인서 양식에 명의자 서명을 받는다면 본인인증이 가능한지?

답변

- 본인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본인인증을 할 때 사용하는 아이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다만, 단순히 전화상으로 성함,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본인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자체 제작한 가족관계확인서 양식에 해당 근로자와 휴대폰 명의자 서명을 받아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인증번호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라면, 본인확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1-2-2

-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에서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의미인지?

답변

- 해당 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 경우에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반드시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하라는 것을 의미함
* 예시) 'A' 어느 한 과정을 총 3번 반복하여 학습하는 경우, 1차시에는 해당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나머지 2~3차시에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

1-2-3

-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에서 '교육 수업을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은 어떤 의미인지?

답변

- 사업장의 근무시간 내에 작업시간과 교육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한 후 사전에 정해놓은 시간에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GPS를 통해 작업 또는 운전 에 대한 움직임을 감지하여 교육을 정지시켜 수업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의미함

1-2-4

○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에서 '동시접속방지기능'은 어떤 의미인지?

답변

○ 교육생의 중복 수강 및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하나의 ID가 여러 PC에 동시에 접속할 수 없는 기능을 말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도 동시에 실시할 수 없음을 의미함

1-2-5

○ 인터넷 원격교육 시 순수 12시간(6시간)의 동영상 자료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 교육 로딩 시간, 시험시간 등을 포함하여 실제 교육을 이수한 시간이 12시간(6시간) 이상이라면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음

1-2-6

○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에서 과정과 과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

○ 예를 들어 귀 기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업무상 재해와 재해 유형으로 구성되어 반기마다 편성되어 있다면,
- 반기마다 편성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각각 하나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며, 교육과정 당 총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7

○ 안전보건교육 운영기간을 학교 운영 단위(또는 회계연도)로 적용가능한지 여부는?

답변

○ 정기교육 산정기간의 기준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
이므로, 매분기는 회계연도상의 분기가 아닌 입사일로부터 분기를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장 교육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교육 주기를 회계연도 또는 기업 상황에 따른 주기로 산정하여 조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분기(3개월) 이내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후 그 이후 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산정주기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1-3. 기타(교육내용, 강사, 증빙 등)

1-3-1

-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교육과목에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교육내용 일부가 빠져있어도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답변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정하되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토록 하였음
 - 교육과정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교육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음

1-3-2

-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중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1-3-3

- 시행령 별표 10 2호나목6)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분야라는 것에 대학교 교수로서 시스템공학을 가르치는 업무로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해당하는지?

답변

- 대학교의 학과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참고하여 해당 학과의 전공교육과목에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목이 48학점 이상 편성된 학과를 말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대학교 교수라면 시행령 별표 10 2호나목6)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1-3-4

- 교육기관에서 지정인력 외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력을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 외부인의 강의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다만, 외부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경우 시행령 별표10 강사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 직무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시행령 별표 12의 강사 기준에 부합해야 함

1-3-5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중 경력이 지정등록된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니지만 강의한 경력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

- 품질, 환경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하며,
 - 경력증명서상에 수행한 업무내용과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1-3-6

- 직무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기본인력인 총괄책임자, 강사는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기본인력(총괄책임자 및 강사)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의 취지는 위탁기관을 운영하는 동안 기본인력이 교육업무를 상시적으로 전담하도록 하는 데 있고, 인력요건은 등록을 위한 최소기준이므로 업무시간의 어느 시점에라도 총괄책임자 및 강사가 상시 근무, 즉 '상근'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1-3-7

-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선정 등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1-3-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2호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분야”의 의미는?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2호의 “해당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중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

1-3-9

- 의사 또는 간호사가 진행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 대상의 범위는 어디 까지 인정되는지?

답변

- 강사가 타 분야에서의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강사의 자격, 경력에 맞춰 효율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1-3-10

-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강사로서 다른 관리감독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

- 관리감독자는 교육을 이수한 여부와 관계없이 강사로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1-3-11

- ① 안전보건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②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실시 결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교육실시 결과 서식, 보존방법, 서명날인 대신 디지털 사진 첨부 등 교육실시 결과 증빙자료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나,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 점검 또는 감독 시 그 실시 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1-3-12

-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실시 결과에 대해 법에서는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함이 바람직

1-3-13

- 근로자가 컴퓨터가 없다는 사유로 안전보건교육(인터넷 원격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변

-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장소제공,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여러 차례 교육 참여 독려 등을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컴퓨터가 없어 교육 수강이 원칙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 다른 교육방법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1-3-14

- 수급사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도급사 직원이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는 관계수급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교육실시 결과 서식, 보존방법, 서명날인, 사진첨부 등 교육실시 결과 증빙자료의 경우는 각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 점검 또는 감독 시 그 실시 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함

1-3-15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각각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 교육 미실시에 대한 책임 여부는?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수급업체 직원들의 경우 수급업체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에 대한 책임도 부여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장소 및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한다면 도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1-3-16

-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실시한 것으로 인정됨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1. 정기교육 관련 사항

2-1-1

- 안전·보건관리자가 직무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해에는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신규, 보수)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면제받을 수 없음

2-1-2

- 안전·보건관리자가 교육계획의 수립, 준비 강의, 진행 등을 진행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지?

답변

- 안전·보건관리자가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육계획의 수립, 준비 등의 과정은 교육을 실시한 시간으로 볼 수 없어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2-1-3

-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여기서,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함
-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반기 1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1-4

- 고소위험공정작업에 따른 특별교육을 2시간 이수한 근로자는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답변

-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함

2-1-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교육을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답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안전보건교육을 분할 실시하더라도 적법한 교육에 해당함

2-1-6

- 근로자 정기교육은 작업 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 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작업 전이나 작업종료 후 등 근무 외 시간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2-1-7

-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가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에서 해야 하는지?
- 안전보건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 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실시 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해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이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2. 채용 시 교육 관련 사항

2-2-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도급사가 하는 것이 적법한지?
- 장비를 임대하고, 현장에서 조종사를 채용할 경우 교육 의무 주체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기관이 있는지, 도급사에서 시켜도 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실시하여야 하고,
 -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달라지면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합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적용기준은 계약의 형태, 사용·종속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①'건설기계 소유주와 건설업체의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건설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자이며, ②'알선(지입)업체와 건설업체의 계약'의 경우에는 알선(지입)업체가 중개업체에 불과한지, ③알선(지입)업체와 조종사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중개업체에 불과한 경우라면 건설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임
 - * 차량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한 원청업체 또는 하청업체 등 계약주체
 -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 바람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검색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 적용기준(2020.04.01. 5페이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또한,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www.safetyedu.net)에서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음
 -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 인터넷 교육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2-2

-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계속 고용 기준의 기간(한달이상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 행정 해석에서 말하는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라고 인정되는지?
- 계속 고용기준 충족기준 및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라면, 일용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 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기간에 관계없이 고용을 보장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
 - 근로계약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교육은 8시간을 실시하고 그 채용된 기간이 반기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정기교육 12시간도 추가 실시하여야 함

2-2-3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 시 교육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고용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답변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
- 그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2-2-4

- 근로자가 A 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 내의 B 협력회사에서 작업 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은 면제됨

2-2-5

-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채용 시 교육(8시간)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동 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채용 시 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2-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관련 사항

2-3-1

-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사무직 인원이 과거 투입된 해당직무의 직무전환교육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후 또다시 파업으로 인해 해당 직무로 투입되는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직무전환교육은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과거 투입되었던 사무직 인원의 현장 재투입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재실시 여부와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함

2-3-2

- ① 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 ② “A”라는 구역에서 운반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 ③ 동일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 기계설비나 작업장소 및 생산제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2-3-3

- A 공정 → B 공정 순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로테이션이 돌아올 때마다 작업내용 변경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순환근무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A, B 공정에 해당하여 최초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당시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로테이션이 돌아왔다고 하여 교육을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4. 특별교육 관련 사항

2-4-1

- A, B, C, D 사업장에 약품을 납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차주)의 특별교육 실시 주체는 어디인지?

답변

-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약품 업체라면, 물건 업체가 화물차주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이며, 화물차주가 약품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여 타 사업장에 약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약품을 납품받는 사업장(A, B, C, D)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2-4-2

-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5대의 판단기준은?

답변

- 컨베이어는 여러 개의 단위 컨베이어를 조합하여 구성되거나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 이송물의 이동(흐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컨베이어로, 단독으로 사용되는 컨베이어는 그 단위 자체를 하나의 컨베이어로 보아 5대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4-3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에서 2미터의 기준은?

답변

- 여기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이란, 물건 자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물건 자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해당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2-4-4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답변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에 대한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1에 규정하고 있음

2-4-5

- 하역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 특별안전교육 중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39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운반용 등 하역기계(컨베이어,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를 총 5대 이상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4-6

- 단순히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도 특별교육 대상인지?

답변

- 화물자동차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나, 화물자동차를 단순 주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4-7

- 품질분석 업무를 위해 방사선 물질이 장치되어 있는 분석기에 넣어 분석 / 실험하는 작업은 실험용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분석기를 사용하여 품질분석을 하는 작업이 의료 및 실험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2-4-8

- 병원에서 병원체의 진단·검사·판독을 위해 사용하는 인화성 물질은 시험 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답변

-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여 병원체를 진단·검사·판독하는 작업이 치료를 위한 과정의 일부가 아닌 단순히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4-9

- 특별교육 대상 물질을 소량 사용하는 경우도 취급으로 보는지?

답변

- 취급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를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함
 -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라면 물질의 사용량과 관계없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2-4-10

- LPG-산소 용접장치를 반입하여 대차를 통해 이동하며 용단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에 해당하는지?

답변

-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으로 가스 형태의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을 제조하는 장치를 말함
- LPG-산소 용접장치와 같이 단순히 인화성 가스를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의 발생장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2-4-11

- 산업용 로봇이 밀폐된 장부 내부에 이고 신체와 간섭이 없으며 유지·보수 작업 시에도 원격으로 진행하는 경우 특별교육 대상인지?

답변

- 밀폐 여부, 공정 특성 등의 조건을 예외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로봇과 관련된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는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함
- 다만, 단순히 외부에서 모니터를 통해 전원 버튼만을 동작하는 등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유지·보수 등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2-4-12

- 동바리가 없는 낮은 높이의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한 거푸집을 취급하는 경우 특별교육 대상인지?

답변

- 거푸집 동바리는 거푸집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거푸집 동바리를 제외하고 거푸집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4-13

- 시험연구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며 조직의 고정 및 조직(검체) 살균, 소독으로 사용되는 포르말린(CAS No 50-00-0)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답변

-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이란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이윤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제외한 연구실 내에서 연구 및 시험 등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것을 말함

2-4-14

- 밀폐공간에 대한 청소를 용역을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폐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답변

- 귀사의 근로자가 밀폐공간 내에서의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4-15

-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 1반 2대, 가공 3반 3대) 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답변

- 각 부서가 별도로 구획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특별교육 대상 여부 판별 시 각 부서가 보유한 호이스트를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나의 사업장이고 보유한 호이스트가 합산하여 5대 이상이라면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2-4-16

- 사용 및 운전, 보전 등과 같은 작업 없이 육안점검 등과 같이 직접적인 작업이 아닌 경우 '취급'으로 보지 않고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답변

-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다면 특별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2-4-17

-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 제재는 무엇인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 별표5에 따라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0만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4-18

- 같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이 2년 가량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마다 특별교육을 해야 하는지?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관하여 같은 종류의 작업은 해당 작업팀을 묶어서 최초 2시간을 실시하고 그 후에 작업에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채용되거나 해당 작업의 작업내용이 변경된다면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 같은 현장에서 다양한 타워크레인에 대해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하는 경우 각 타워크레인 별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은 작업에 투입되기 전 1번만 실시

2-4-19

- 근로자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60일 이내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시간을 추가적으로 이수하면 되는지?
- 추가된 교육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답변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을 예상하여 특별교육을 2시간 이수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작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초과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14시간)을 실시하여야 함
 - 추가적인 교육(14시간)은 최초 작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2-4-20

- 작업 시 락카 사용시간이 1년에 총 30분 정도라면 간헐적 작업으로 보고 특별교육을 2시간만 실시하여도 되는지?

답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제3조의2제2항에서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정확한 작업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락카의 구성 성분 중 허가 및 관리대상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특별교육 대상작업 중 제35호 "허가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해당하고 락카를 취급하는 작업의 작업일수가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헐적 작업이므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면 됨

2-4-21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특별교육을 재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만을 추가적으로 실시

2-4-22

-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 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내용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작업설비 및 작업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4-23

-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교육을 한 때에는 신규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 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교육 대상 작업(동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내용이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교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작업내용 변경이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업주는 특별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 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4-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반대의 경우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특별교육 공통부분 8시간은 같음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 시 교육 내용과 특별교육 공통내용은 동일하여,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추가로 특별교육의 공통내용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과거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현재 들어야 하는 특별교육 16시간의 일부(8시간)가 면제될 수는 없음

2-4-25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특별교육은 별도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4-26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작업 이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특별교육을 시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같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교육 대상 직종의 정확한 구분은?

답변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이 아닌 사유로 교육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해당 교육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의 요건에 맞춰 교육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은 직종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4-27

- ① 근로자가 다른 곳으로 이직 후 1년 이내 동일한 특별교육대상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50% 면제가 되어 8시간만 교육받아도 되는지?
- ② 특별교육 50% 면제를 받더라도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는지?
- ③ 간헐적 작업이거나 단기간 작업은 특별교육을 2시간만 해도 되는지?
- ④ 일용직 근로자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인 작업을 3달에 걸쳐 진행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만 하면 되는지?
- ⑤ ④번의 경우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는지?

답변

①, 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2을 면제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③, ④, 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헐적 작업에 해당하므로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는 중복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시간의 범위만큼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해당하여 특별교육 2시간을 실시한 경우에는 채용 시 교육 8시간 중 2시간이 면제되므로 6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4-28

- 산안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호에 따른 같은 도급인 사업장 내 소속 사업장 변경의 의미
 - A 현장(서울) 'ㄱ' 협력회사(수급인)에서 동일 현장 'ㄴ' 협력회사(수급인)로 이직한 경우인지?
 - A 현장(서울) 'ㄱ' 협력회사에서 B 현장(경기도) 'ㄷ' 협력회사로 이직한 경우인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에서는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의 의미는 같은 도급인(예시: ○○건설) 건설현장의 A 협력회사(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B 협력회사(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동일장소에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 협력업체 사정(폐업, 사업철수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속(A 협력회사 → B 협력회사)이 변경되는 경우로 동일장소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이 면제된다는 것임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3-1

- ①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답변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 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원청업체 소속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 소속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함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함

3-2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 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 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 ②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 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사의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인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3-3

- 관리감독자가 12월 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됨

* 예시) 관리감독자 선임일(2021.12.1.)에 따른 교육이수 기간: 2021.12.1. ~ 2022.11.30.

3-4

- 관리감독자가 동일 기업 내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될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16H)을 새로 수강해야 하는지?

답변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16시간)은 부서가 이동되거나 소속 사업장의 근무 장소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받은 교육시간이 인정됨
- 다만, 부서 이동 또는 소속 사업장의 근무 장소 변경으로 인해 작업환경, 업무 내용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3-5

- 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 ②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 제3조2제3항에 따라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해야 함
-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일반 근로자, 관리감독자)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

3-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비고에 따른 내용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도 적용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비고에서 포함하고 있는 교육은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 관리감독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비고 3, 4, 5, 6을 동일하게 적용

3-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답변

-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당해 연도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면제될 수 있음

3-8

-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 후,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경우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은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새롭게 채용하였을 때 실시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경우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임

3-9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여러 개인 경우, 관리감독자는 여러 개에 대한 특별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는지?

답변

- 관리감독자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직접 노출되지 않는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들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4 직무교육

4-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인지?

답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님

4-2

- 계열사인 A와 B 사업장에 관리책임자로 동시에 선임되었을 경우 관리책임자 교육을 1회만 받으면 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함
 - A와 B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동시에 선임되었더라도 위 요건에 맞게 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은 1회를 받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3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를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와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선임으로 볼 수 없음

- 지방관서에 변경선임 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4-4

-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의사나 간호사들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 제1항제2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에 따라 2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답변

-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중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해당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자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비록 조문상에 없더라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4-5

-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 기준 확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이수하게 된 해당 분기, 해당 연도, 직무교육 주기 전체 등 3가지 경우 중 적용하게 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답변

- 안전보건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연도의 정기교육을 면제한다는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0호)에 제9조제7항에 따라,
-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고 정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 중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4-6

- 시행규칙 개정 이후 보수교육 주기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6개월 이전에 보수교육 주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함
- 21.4.1.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은 23.1.1~23.7.1.(전후 3개월)
- 21.7.1.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은 23.1.1~24.1.1.(전후 6개월)
- 21.10.1.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은 23.4.1~24.4.1.(전후 6개월)

5

안전보건교육기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5-1

-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명단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안전보건교육”으로 검색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 안내 게시물 확인

5-2

-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사무실과 강의실이 떨어져 있는 것은 가능한지?

답변

- 원칙적으로 사무실(연면적 30제곱미터)과 강의실(연면적 120제곱미터)은 같은 건물에 있어야 함
- 다만, 떨어져 있는 경우라도 현장실사를 통해 바로 인접하고 있어 사무실과 강의실 간의 이동이 불편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음

5-3

- "시설 및 장비"는 전용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① 자체 소유한 건물로 사용상의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태를 말하며, ② 임차한 경우에도 건물주와 사용상에 아무 제약 없이 계약한 경우를 말함
- 특정 일자를 사용하는 조건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강당 등은 “전용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어 등록 시 인정할 수 없으며, 장비의 경우에도 동일함

5-4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의실 면적이 117.9제곱미터의 강의실을 가지며 12제곱미터의 면적의 강의접수, 커피 등 다과를 먹을 수 있는 곳을 포함한다면 가능한지?

답변

- 강의실 면적은 순수하게 강의에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준비, 접수 등의 부대시설은 면적에서 제외됨

5-5

-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 시 같은 건물에 층을 달리하여 강의실을 2개로 하여 면적의 합을 120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에는 강의실 기준이 연면적 120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면적 개념은 합산해서 해당 면적이 120미터가 넘는다면 등록 가능하나, 강의실 1개의 면적이 실질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소규모 강의실 수개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질적인 강의 실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5-6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등록된 사무실을 위탁교육기관의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인력·시설 등을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각각 별도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준수해야함
- 다만, 사무실 면적이 충분히 넓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은 사무실의 면적이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사무실 면적을 초과하고 명확히 교육사무실 및 강의실등이 구분(파티션등으로) 되어 있다면 공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5-7

- 안전보건교육 교육장을 한 달에 5일 정도 사용하고 있어 나머지 25일을 대관, 다른 교육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날에 빈 교육장을 대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임
- 다만, 다른 용도로 강의실을 활용하는 목적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목적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임

5-8

-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답변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외의 타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음

5-9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위탁기관을 등록 시, 기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의 경우 다른 업무와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에 필요한 인력을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으로 등록하게 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5-10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공기질측정, 작업환경 측정, 석면조사 등과 회사의 형태 또는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와 실무 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인지 후인지?

답변

-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라 함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업무로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리키며, 실내공기질, 대기, 수질 등의 환경분야 대행업체에 재직 중의 경력은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라고 보기 어려움

5-11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 ① 신규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②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③ 신규근로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답변

- ①,②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은 각각 실시해야 함

부 록

V

1.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수정·변경 이력
2.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비교
(안전보건교육 부분 발취)
3.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4. 한국표준산업분류

연번	일자	주요 내용 및 변경 내역	비고
1	2021. 9.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및 법령 해석 등	
2	2022. 2.	<p>▲ 산업안전보건법령('21.11.19.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가(p.1, p.43)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등 4개 직종 추가, 총 9개 직종)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 추가 (p.37)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p>▲ 행정해석 등 참고 자료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기타직 구분 (p.15) (근무장소, 업무(직종)에 따른 사무직 구분 기준) - 일용직근로자 채용 시 교육 행정해석 (p.22) (기존: 채용시마다 1시간 교육 → 변경: 1주에 1시간 교육)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설명자료 등 (p.45)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시간·대상·방법 등)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대상 확인방법 (p.58)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안내 자료)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 (p.18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유예제도 및 실시간화상교육, 모바일교육 실시 기준 등, '21.12.23.시행)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77개 업종 (p.202) - 각 제도별 자주묻는 질문(FAQ) 추가 <p>▲ 기타 변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으로 이해하는 교육제도 (p.3) (교육 관련 산안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체계도) -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사유 및 내용 (p.33) - 직무교육의 면제 사유 및 내용 (p.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직무교육기관 등록 관련 법령 (p.69) (교육기관 등록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 	

연번	일자	주요 내용 및 변경 내역	비고
3	202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규정('23.3.2.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 ○ 안전보건교육 관련 용어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정의 규정 개정 또는 신설(p.7) (의무주체인 '사업주등' 및 교육대상인 '근로자등') ○ 안전보건교육 기준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방법 구체화(p.8, p.49)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형태, 교재 및 강사에 대한 기준) - 직무교육의 방법 구체화(p.41)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형태, 교재 및 강사에 대한 기준) ○ 안전보건교육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교육에 대한 기준 개선(p.8) (기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주관 → 변경: 교육종류별 강사가 주관) - 인터넷 원격교육(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 교육 포함)에 대한 기준 개선(p.8) (평가 방법과 기준 등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 구체화) -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기준 신설(p.8)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고시 별표 2제2호) -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 완화(p.8) (교육일정 수립·변경 등 교육기관의 행정절차 관련 규정 삭제) ○ 안전보건교육 면제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확대(p.38)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무교육 이수 시 또는 강사로서 안전보건교육 시 등 정기교육 면제 확대) - 전문화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기준 확대(p.47) ○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교육과정 개설·운영에 대한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p.78) (기존: '직무교육 관리위원회' 사전승인 → 변경: 공단 전산시스템 등록) ○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확대(p.8, 별표1) (사업주, 안전·보건 전담 조직 소속 근로자 추가) ▲ 행정해석 등 참고 자료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규정(p.171) - 각 제도별 자주묻는 질문(FAQ) 추가 	

연번	일자	주요 내용 및 변경 내역	비고
4	202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3.9.28.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교육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에서 전후 6개월로 개정(p.50)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 (p.7)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p.7)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p.178)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p.18, p.29)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p.7) - 관리감독자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을 별도 규정(p.20, p.30)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 (p.20, p.30) 	
5	202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규정('23.12.12.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 ○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문구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p.195)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에 따라 안전 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던 TBM 활동을 규정에 명문화(p.195)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p>제정 1981.12.31. 법률 제03532호 전부개정 2019. 1.15. 법률 제16272호 일부개정 2020. 3.31. 법률 제17187호 타법개정 2020. 5.26. 법률 제17326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3호 일부개정 2021. 4.13. 법률 제18039호 일부개정 2021. 5.18. 법률 제18180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p> <p>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안전보건교육</p> <p>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p>	<p>제정 1982. 8. 9. 대통령령 제10889호 전부개정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타법개정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2020. 8.27. 대통령령 제30979호 일부개정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4호 타법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일부개정 2021. 1.12. 대통령령 제31387호 타법개정 2021. 3.30. 대통령령 제31576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안전보건교육</p>	<p>제정 1982.10.29. 고용노동부령 제017호 전부개정 2019.12.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일부개정 2021. 1.19.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일부개정 2023. 9.27. 고용노동부령 제393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안전보건교육</p> <p>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p>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p>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p>		<p>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p>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p>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 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p> <p>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 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p> <p>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p>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p>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p>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p> <p>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 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p>		<p>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p>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 ① 법</p>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p>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p>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p> <p>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p>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p>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수행하는 사람</p> <p>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p> <p>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p> <p>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p> <p>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p> <p>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p> <p>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p> <p>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p> <p>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p> <p>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p> <p>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p> <p>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p>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p>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0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1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③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p>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p> <p>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다. 영 별표 10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라.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2.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다. 영 별표 1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p>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나. 비영리법인</p> <p>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기관의 명칭(상호)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p>장비 명세서</p> <p>라.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p>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p> <p>⑥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하여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p>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활용도 2.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 성과 3.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p> <p>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40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p>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p>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40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p> <p>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p> <p>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① 공단은</p>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p>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p> <p>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①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되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직 전에 받은 교육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p> <p>④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6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법 제29조·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p> <p>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p>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p> <p>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p> <p>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p> <p>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p>	<p>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과징금으로 한정한다)</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p> <p>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p> <p>다. 정보서비스업</p> <p>라. 금융 및 보험업</p> <p>마. 기타 전문서비스업</p> <p>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p> <p>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p> <p>아. 사업지원 서비스업</p> <p>자. 사회복지 서비스업</p>	<p>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p> <p>가. 농업</p> <p>나. 어업</p> <p>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p> <p>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p> <p>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p> <p>바. 녹음시설 운영업</p> <p>사. 방송업</p> <p>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p>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 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 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 교육은 제외한다) ,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 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반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로 등록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 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

가.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사
-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3)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1) 가목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산업안전·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4)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6)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7)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8)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제조업, 건설업, 기타 사업(제조업·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각각 1개 이상 보유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기본사항

-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 5) 건설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 가. 사무실: 연면적 30㎡
- 나. 강의실: 연면적 120㎡이고, 의자, 책상,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과 방음·채광·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반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3명 [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명)]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해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직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 3) 안전검사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구분	교육대상	관련 분야
총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산업 안전	3) 안전관리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산업안전
산업 보건	6) 보건관리자 7)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8)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산업보건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관련 분야는 산업보건 분야 중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한다.
안전 검사	9)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10)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

나. 인력별 기준

구분	자격기준
총괄 책임자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구 분	자격기준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강사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3. 시설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m²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m²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교육대상별 장비 기준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회전속도측정기	1
2) 온도계측기(표면온도 측정용일 것)	1
3) 소음측정기	1
4) 절연저항측정기	1
5) 접지저항측정기	1
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7) 클램프미터	1
8) 검전기(저·고·특고압용일 것)	1
9)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나.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화학적 인자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2) 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3) 소음측정기	1
4) 습구·흑구온도지수(WBGT)의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1
5) 검지관 등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장비명	수량(대)
6)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7) 청력검사기	1
8)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스모크테스터	1
9)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1
10) 심폐소생 인체모형	1
11) 혈압계	1
12)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13)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장비명	수량(대)
1) 절연저항측정기	s1
2) 접지저항측정기	1
3) 클램프미터	1
4) 검전기(저·고·특고압용일 것)	1
5) 소음측정기	1
6) 검지관 등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7)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8) 심폐소생 인체모형	1
9) 혈압계	1
10)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11)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라.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지역시료 채취펌프	1
2) 유량보정계	1
3) 입체현미경	1
4) 편광현미경	1
5) 위상차현미경	1
6) 흠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일 것]	1
7)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일 것]	1
8) 아세톤 증기화 장치	1
9) 필터 여과추출장치	1
10)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mg 이하이어야 한다)	1
11)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일 것),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 { 분진·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 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일 것]	1

마.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회전속도측정기	1
2) 비파괴시험장비	1
3) 와이어로프 테스터	1
4) 진동측정기	1
5) 초음파 두께측정기	1
6) 토크메타	1
7) 로드셀, 분동	1
8) 온도계측기(표면측정용일 것)	1
9) 소음측정기	1
10) 절연저항측정기	1
11) 접지저항측정기	1
12) 정전기전압측정기	1
13) 클램프미터	1
14) 검전기(저·고·특고압용일 것)	1
1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도농도의 측정이 가능할 것)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4.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가목에 따른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 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5.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6.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1호라목의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삭제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p><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p>	<p>다목과 같은 내용</p>
<p><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p>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 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 흠,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p> <p>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p>	<p>○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p> <p>○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p> <p>○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p> <p>○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p>
<p>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p> <p>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p> <p>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p> <p>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p>	<p>○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p> <p>○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p> <p>○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p> <p>○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p> <p>○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p>
<p>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p>	<p>○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p> <p>○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p> <p>○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p> <p>○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p> <p>○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p>
<p>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p>	<p>○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p> <p>○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p> <p>○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p> <p>○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p> <p>○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p>
<p>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p>	<p>○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p> <p>○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p>

<p>기계로 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 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 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취급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로봇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석면해체·제거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나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내용(공통내용은 제외한다)과 같음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28조제1항 관련)

교육 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보건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

<p>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p>	<p>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마. 석면조사기관 종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흘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3)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5)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6)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7)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8)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3)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4)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5)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7)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내용
<p>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제1호 라목과 같다.

5.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설비명	교육과정	교육내용
가. 프레스 및 전단기	성능검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프레스 및 전단기 개론 ○ 프레스 및 전단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나. 크레인	성능검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크레인 개론 ○ 크레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다. 리프트	성능검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리프트 개론 ○ 리프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라. 곤돌라	성능검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곤돌라 개론 ○ 곤돌라 구조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마.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산업보건 개요 ○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검사원 직무
바. 원심기	성능검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원심기 개론 ○ 원심기 종류 및 구조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사. 롤러기	성능검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롤러기 개론 ○ 롤러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아. 사출성형기	성능검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사출성형기 개론 ○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자. 고소작업대	성능검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고소작업대 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차. 컨베이어	성능검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컨베이어 개론 ○ 컨베이어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카. 산업용 로봇	성능검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산업용 로봇 개론 ○ 산업용 로봇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정 2006. 9. 29. 노동부고시 제2006-28호
 개정 2008. 11. 24. 노동부고시 제2008-71호
 개정 2009. 7. 7. 노동부고시 제2009-27호
 개정 2010. 4. 30. 노동부고시 제2010-35호
 개정 2012. 1.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6호
 개정 2012. 8.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3호
 개정 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80호
 개정 2014.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5호
 개정 2017. 1. 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호
 개정 2017. 10. 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8호
 개정 2018. 8.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7호
 개정 2018. 11.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개정 2019. 7.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7호
 개정 2020. 1.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개정 2020. 11.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개정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개정 2023. 2. 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개정 2023. 12. 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3.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 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 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5. "직무교육"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신규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나. 보수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라 한다)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특별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7. "성능검사 교육"이란 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31조에 따른 교육으로서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말한다.

8.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7조, 영 별표 4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말한다.

9.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9조 및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10. "전문화교육"이란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등 및 직무교육대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 또는 관련 분야별로 개발·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1. "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3호와 제6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 다. 직무교육기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5호와 제10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12. "집체교육"이란 교육 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3. "현장교육"이란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1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 지는 교육을 말한다.
15. "비대면 실시간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 또는 전자문서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② 삭제

제2장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 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나.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다.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영 별표 10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④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고노무수령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및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특고노무수령자"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③ 특고노무수령자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4조(현장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2.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제5조(인터넷 원격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2.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3.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나.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다.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제6조(비대면 실시간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 실시간 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별표 2제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우편통신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2.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3.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제8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실적제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등이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등은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등이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⑧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삭제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⑪ 삭제

⑫ 삭제

⑬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규칙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3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5제2호에서 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것. 다만, 같은 호나목에 따른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착용 및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 다만, 체험·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 가. 60㎡ 이상: 20명 이내
 - 나. 80㎡ 이상: 30명 이내
 - 다. 100㎡ 이상: 40명 이내
 - 라. 120㎡ 이상: 50명 이내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 가. 60㎡ 이상: 20명 이내
 - 나. 80㎡ 이상: 30명 이내
 - 다. 100㎡ 이상: 40명 이내
 - 라. 120㎡ 이상: 50명 이내
5. 규칙 별표 5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분야의 교육은 영 별표 11제2호가목에 해당

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나목 중 건설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교육과정의 운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공단에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수강신청 등) ① 건설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초과 등의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교육 이수증 발급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이수증의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2항의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교육이수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폐업·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이수증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6(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 등) ①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보유 여부와 교육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칙 제34조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부 등 교육생의 교육이수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7 삭제

제13조의8(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건설 일용근로자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제4장 직무교육

제14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교육대상자이다.

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는 직무교육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이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 직무교육기관이 정할 것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 가. 집체교육
 - 나. 현장교육
 - 다. 인터넷 원격교육
 -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영 별표 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 ③ 직무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직무교육”으로 본다.
- ④ 삭제

제16조(직무교육일정 수립·변경) 직무교육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수강신청서와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 등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통지 및 등록) ①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 ② 직무교육기관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은 직무교육기관이 지정하는 교육등록일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교육생은 교육연기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이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

- 제18조(직무교육기관의 운영)**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 등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직무교육과정(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 실시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제19조의5에 따른 직무교육센터(이하 "직무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직무교육과정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실시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연간 교육일정을 직무교육센터에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센터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 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직무교육센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⑦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실적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19조의2 삭제

제19조의3 삭제

제19조의4 삭제

제19조의5(직무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① 공단은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신청·접수, 교육실시 및 이수 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6 삭제

제19조의7(교재)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직무교육기관의 직무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 규칙 제3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영 별표 4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영 별표 6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 ② 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1조 삭제

제5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제1절 사업주교육

제21조의2 삭제

제21조의3 삭제

제21조의4 삭제

제21조의5 삭제

제21조의6 삭제

제2절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인정

제21조의7 삭제

제21조의8 삭제

제6장 성능검사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

제1절 성능검사 교육

제22조(교육기관)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이다.

1. 공단
2.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위탁교육기관

제23조(성능검사 교육방법 등) ① 제22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성능검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직무교육과정"은 "성능검사 교육과정"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으로, "영 별표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제3호나목"으로 본다.

- ② 성능검사 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성능검사 교육"으로 본다.

제23조의2(교육 수강신청 등) ①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성능검사 교육 수강신청서를 별지 제3호의4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성능검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의3(성능검사 교육일정 수립·변경) 성능검사 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제17조제1항"은 "제23조의2제1항"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23조의4(수강통지 및 등록) ① 성능검사 교육기관은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성능검사 교육의 수강등록 및 교육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제23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7과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 ④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제23조의6(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① 공단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8과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 ④ 영 별표 4제11호와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운영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 ⑤ 영 별표 4제11호와 제12호의 '정해진 시험'이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후 제36조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7장 전문화교육 및 강사요원 교육 등

제1절 교육과정 등

제24조(교육과정) ① 공단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2. 전문화교육과정
3.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통신교육과정 및 인터넷 원격교육과정
4.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 ② 삭제
- ③ 삭제

제2절 전문화교육

제25조(전문화교육과정 개설·운영)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전문화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2(전문화교육일정 수립·변경) 전문화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대상자"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 제26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문화교육과정을 수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 ⑤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교재)** ① 직무교육기관은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공단은 전문화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28조(전문화교육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 직무교육기관이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2.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3.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제3절 강사요원 교육과정 및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 제29조(강사요원 교육과정)**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 제29조의2(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소속 강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3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8장 시험 및 교육 실시확인서 등

제35조(시험대상자) 이 장에 따른 시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

1. 성능검사 교육을 수강한 사람
2. 성능검사 교육 대상자 중 전문화교육을 수강한 사람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사람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 ③ 실기시험은 실험과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발표를 병행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해당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위원회 구성·운영) 교육기관이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결과 합격기준
3. 시험합격자의 결정
4.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시험관련수당의 지급)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시험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제40조(교육 실시확인서 등)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실시확인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주등 또는 특고노무수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실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1.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2.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3.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4. 교육형태를 혼합하여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각각의 교육형태 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직무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2. 전문화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3. 성능검사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4.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확인서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발급 기한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41조(수수료 등) 법 제166조 및 규칙 제242조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및 평가 등

제4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 ① 공단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2. 교육관리
 - 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분석
 - 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또는 점검 지원
 - 마.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 가. 교육종류 및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안내
 - 나. 교육수요 파악 및 조사
 - 다. 신규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및 교육과정의 보급
 - 라.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 마. 우수 강사 육성 및 관리
 - 바. 안전보건교육 제도 관련 정책 연구
4. 교육기관 평가

- 가. 평가지표의 개발·관리
- 나.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 다. 평가결과의 공개

5.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에 관한 사항
3.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화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⑦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제8조와 제18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경우에는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공단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시설·장비 및 보유한 교육과정 등을 심사하여 업종별·직종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43조에 따른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45조(교육실시기관간의 업무협조 등)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각종 최신이론, 기법, 통계자료 및 교육이수자 명단 등을 상호교환하거나 제공하여 교육의 성과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71호, 2008. 11. 24.>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7호, 2009. 7. 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35호, 2010. 4.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6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를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이 고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범사업 운영으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이 고시에 따라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공단은 동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일에 관계없이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63호, 2012. 8. 31.>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3조의8의 규정은 2013.1.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80호, 2013. 12. 31.>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65호, 2014. 12.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호, 2017. 1.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8호, 2017. 10.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7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8-67호, 2018. 8.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제3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73호, 2018. 11.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7호, 2019. 7.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1호, 2020. 1.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29호, 2020. 11.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71호, 2022. 8.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3-10호, 2023. 2.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제2호마목, 제5조제1호, 제7조, 별표 2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제3조(직무교육기관의 우편통신교육에 관한 특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직무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우편통신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관리감독자는 해당연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제40조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63호,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제2호마목, 제5조제1호, 제7조, 별표 2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제3조(직무교육기관의 우편통신교육에 관한 특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직무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우편통신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관리감독자는 해당연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제40조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제3조의2, 제10조, 제15조 관련)

1.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4.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 라. 「의료법」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마.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제5조 및 제6조 관련)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의 기준

구분	기준
가. 전산시스템	1) 네트워크: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할 것 2) 방화벽: 보안서버 이외에 외부해킹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나 방화벽을 갖출 것 3) 홈페이지: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생모듈, 강사모듈, 관리자모듈 등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나. 교육내용	1) 전체 교육 시간대별 세부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제시된 교육내용이 정확하여야 하며, 텍스트, 시각자료, 청각자료 등을 통하여 교육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을 것 2) 적절한 보충·심화학습이 가능하고 교육 진행을 위한 안내 설명 및 도움말 기능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을 것 3) 교육자료의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고 교육내용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할 것
다. 교육관리	1)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2)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3)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순차학습을 통하여 교육생이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하며 수시로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질의)토록 하여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기관 소개, 교육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교육생 모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5) 수강번호,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교육생 모듈)에 갖추어져 있고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교육생 모듈)에서 가능할 것 6) 교육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일, 평가결과 송부일 등 수강현황이 웹상(관리자 모듈, 교육생 모듈)에 기록되고 교육생의 개인이력(수강번호, 성명, 소속, 연락처 등)과 학습이력(수강과정, 수강신청일, 수료일 등)이 교육생모듈에 개인별로 갖추어져 있을 것 7) 교육참여가 저조한 교육생들에 대한 독려 시스템(관리자 모듈)이 갖추어져 있을 것 8) 교육생모듈 초기화면에 교육생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
라. 교육평가 관리	<공통>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는 ①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학습평가 ②개인별 보고서 등 과제물에 의한 과제평가 ③학습진도율평가로 구성할 수 있다. 3)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평가는 주어진 교육기간 내에 응시 및 제출한 것에 한정하여 득점으로 인정한다. 5) 학습평가의 시험은 문제 pool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출제는 5개 유형 이상을 확보할 것 6)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 과제평가를 위한 과제제출 등의 평가도구가 적절하고 평가 도구별 세부 내역 및 배점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고 이를 안내할 것 7) 베낀 답안 방지대책 및 베낀 답안 발생시 처리기준이 있고, 교육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인터넷 원격교육> 8)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	기준
	<p>9)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10)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의 과목별 교육시간을 90% 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p> <p>11) 9)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은 학습평가 대신 학습평가와 과제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평가의 배점 기준은 20%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12) 11)에 따라 과제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기관은 제출된 과제물을 검사하여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교육생모듈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우편통신교육></p> <p>1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우편통신교육의 교육생에게 시험일시 또는 과제물 작성 방법과 제출기한을 교육의 실시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p> <p>14) 우편통신교육의 평가에 대한 인정기준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정한다.</p> <p>15) 사업주는 우편통신교육을 수강하였으나 14)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한 관리감독자에게 우편통신교육 외 다른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2.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신설>

구분	기준
가. 플랫폼	<p>1)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 화상으로 표출되고 쌍방향 의견 교환이 가능하며 보안 기능이 구축된 플랫폼을 사용할 것</p> <p>2) 강사와 교안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을 것</p> <p>3) 강사가 교안에 판서를 할 수 있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할 것</p>
나. 과정 개설	<p>1) 전체 교육시간 동안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것</p> <p>2) 과정 개설은 과정당 50회선 이하로 운영할 것</p> <p>3) 회선당 인원은 1명으로 할 것</p>
다. 정보 제공	<p>1)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 진행 절차, 접속 주소(URL), 웹카메라·마이크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교육생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p> <p>2) 교육목표, 출결 관리, 수료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p>
라. 수강 신청	<p>1)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등 수강신청 현황을 갖출 것</p>
마. 출석·수강 확인	<p>1) 플랫폼 화면, 실시간 게시판, 접속기록, 별도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생 출석·수강 여부를 과목별(차시별)로 확인하고 출결관리 기록을 보존할 것</p> <p>2)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SNS,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체 가능</p> <p>3) 교육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p>
바. 질의 및 응답	<p>1) 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게 운영할 것</p>

【별표 3】 (삭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신규, 재발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발급)



【별표 5】 (삭제)

【별표 6】 (삭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제23조의5 관련)

교육내용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10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3시간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자료 활용방법 등	3시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내용 및 시간(제23조의6 관련)

교육내용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4시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5시간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시간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시간
건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	42시간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7시간
합계	84시간

○○○○년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엑셀(Excel), 한셀 등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과정별로 작성합니다.

1. 교육기관 정보

①기관명	②산재 관리번호	③사업개시번호	④등록관서

2. 교육실적

⑤교육과정명	⑥교육대상	⑦교육종류	⑧교육시간	⑨교육형태	⑩업종	⑪이수사업장	⑫이수인원

3. 담당자 정보

⑬성명	⑭전화번호	⑮전자우편 주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 ①~④ 안전보건교육포털(koshats.or.kr) 등록 기준 정보를 기입
- ⑤ 실제 운영 중인 교육과정명을 기입 (예시) 근로자 정기교육(제조업)
- ⑥ ‘근로자등’, ‘관리감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를 기입
- ⑦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기입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중 해당하는 교육 종류를 기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최초노무제공시교육’, ‘특별교육’ 중 해당하는 교육종류를 기입
 - 단, 특별교육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별표5]의 작업내용을 함께 기입 (예시) ‘특별교육 제0호’
- ⑧ 시간 단위로 기입 (예시) 2시간 → 2로 표기
- ⑨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우편통신교육’ 중 해당 교육형태를 기입
 - 단, 혼합하여 교육하는 경우, ‘(혼합)교육형태1+교육형태2+...’으로 기입
 - (예시1)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한다면, ‘(혼합)집체교육+인터넷원격교육’으로 기입
 - (예시2) 집체교육, 현장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한다면,
 ‘(혼합)집체교육+현장교육+인터넷원격교육’으로 기입
- ⑩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기입
- ⑪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업장의 총 개소를 기입 (예시) 100개소 → 100
- ⑫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총 이수자 인원을 기입 (예시) 15명 → 15
- 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성명을 기입
- ⑭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
- ⑮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출석부

○ 교육기관명:

○ 교육일시: 년 월 일(: ~ :)

연번	성명	생년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담당확인
			(교육생 서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현장명		현장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교육생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실무경력 (년/월)	교육 실시일

※ 교육생이 많을 경우 명단 별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록기관의) 장 귀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교육생	성 명	생년월일		교육 실시일
교육 통지 사항	교육일시	2000. . . . ~		
	등록일시	2000. . . . 00시 (장소:)		
	교육 담당자		전 화	
	그 밖의 사항	등록요령 및 수수료 납부방법, 교육연기요령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록기관의) 장 (인)

교육 수강통지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교육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소재지			
교육통지사항	교육종류	[] 직무교육 ([] 신규 [] 보수) [] 전문화교육 [] 성능검사 교육		
	교육대상구분	직무교육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관리책임자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관리담당자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자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보건관리자 <input type="checkbox"/>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전문화교육	<input type="checkbox"/>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성능검사 교육	<input type="checkbox"/> 프레스 및 전단기 <input type="checkbox"/> 크레인 <input type="checkbox"/> 리프트 <input type="checkbox"/> 국소배기장치 <input type="checkbox"/> 곤돌라 <input type="checkbox"/> 원심기 <input type="checkbox"/> 롤러기 <input type="checkbox"/> 사출성형기 <input type="checkbox"/> 고소작업대 <input type="checkbox"/> 컨베이어 <input type="checkbox"/> 산업용 로봇 <input type="checkbox"/> 압력용기		
	교육과정명			
	교육일정	... ~ ... [] 합숙(박 일) [] 비합숙		
	교육등록일시	... ~ ... 시 (장소:)		
	교육 담당자		전화	
그 밖의 사항	등록요령 및 수수료 납부방법, 교육연기요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 제23조의4 또는 제26조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직무교육 ([신규 [보수) 전문화교육 성능검사 교육] 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무교육기관 또는 성능검사 교육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교육연기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교육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소재지				
교육 통 지 사 항	교육종류	[] 직무교육 ([] 신규 [] 보수) [] 전문화교육 [] 성능검사 교육			
	교육대상구분	직무교육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전문화교육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성능검사 교육	[] 프레스 및 전단기 [] 크레인 [] 리프트 [] 국소배기장치 [] 곤돌라 [] 원심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 압력용기			
	교육과정명				
	교육일정	... ~ ... [] 합숙(박 일) [] 비합숙			
	연기 사유	※ 교육 연기가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첨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 제23조의4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교육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직무교육기관 또는 성능검사 교육기관의 장 귀하

○○○○년 직무교육 실시계획서

- ※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엑셀(Excel), 한셀 등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과정별로 실적을 작성합니다.
- ※ 첨부서류는 “직무교육과정 세부 실시계획서 서식”에 따라 한글 등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과정별로 작성합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교육기관 정보

①기관명	②산재관리번호	③사업개시번호	④등록관서
④-1 등록분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보수)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안전관리자([]신규 []보수)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보건관리자([]신규 []보수)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안전검사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2. 직무교육 실시계획

⑤교육과정명	⑥교육대상	⑦교육종류	⑧교육시간	⑨교육형태	⑩업종	⑪정원	⑫교육비용	⑬교육횟수

3. 담당자 정보

⑭성명	⑮전화번호	⑯전자우편 주소

첨부서류: 교육과정별 직무교육과정 세부 실시계획서 1부.

직무교육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교육 실시계획서 작성방법

- ①~④-1 안전보건교육포털(koshats.or.kr) 등록 기준 정보를 기입
- ⑤ 실제 운영할 교육과정명을 기입 (예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제조업)
-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중 하나를 기입
- ⑦ ‘신규교육’, ‘보수교육’, ‘전문화교육’ 중 하나를 기입
- ⑧ 시간 단위로 기입 (예시) 2시간 → 2, 90분 → 1.5로 표기
- ⑨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해당 교육형태를 기입
단, 혼합하여 교육하는 경우, ‘(혼합)교육형태1+교육형태2’으로 기입
(예시1)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한다면, ‘(혼합)집체교육+인터넷원격교육’으로 기입
(예시2) 집체교육, 현장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한다면, ‘(혼합)집체교육+현장교육+인터넷원격교육’으로 기입
- ⑩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부분류를 기준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기입
- ⑪ 교육과정의 정원 기입 (예시) 15명→15
- ⑫ 교육비용은 1인당 비용으로 작성하되, 천원 단위로 기입(백원 단위에서 반올림)
(예시1) 236,000원 → 236 (예시2) 245,600원 → 246
- ⑬ 교육횟수는 연간 교육과정을 몇 번 실시할 예정인지 그 횟수를 기입
(예시) 1월 31일, 4월 1일 2회 교육할 예정이라면 ‘2’로 입력
- ⑭ 직무교육기관의 직무교육 실시계획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성명을 기입
- ⑮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
- ⑯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년 직무교육과정 세부 실시계획서

가. 교육과정 개요

과정명				담당교수	
교육시간		총 정원/회수		회당정원	
과정목표					
학습내용					
교육대상					
과정신청 자격 및 요건	(법적요건)				
	(기술자격 및 경력)				
	(선행학습)				
교육형태	<input type="checkbox"/> 집체교육 <input type="checkbox"/> 현장교육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실시간교육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원격교육 ※ 혼합하여 교육하는 경우 활용하는 교육형태를 모두 선택				
교수방법	<input type="checkbox"/> 강의 <input type="checkbox"/> 실습 <input type="checkbox"/> 발표 <input type="checkbox"/> 토론 <input type="checkbox"/> 팀프로젝트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취도평가	<input type="checkbox"/> 실시 - <input type="checkbox"/> 선다형 <input type="checkbox"/> 논술형 <input type="checkbox"/> 보고서형 <input type="checkbox"/> 구두 발표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교재 (저자/내용)					
실습 기자재 (장비 및 도구)					
기타사항					

나. 과정 명세서

교육과목	주요 내용	교육 형태*	교수유형별 교육시간				담당교수	
			인터넷	강의식	실습· 토의	계 (시간)	성명	자격**
...						
총계								-

* 교육형태는 '2. 직무교육 실시계획'의 ㉠ 참조하여 기입

** 담당교수 자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제2호 또는 이 고시 별표1제3호 중 하나를 기입

다. 교육평가 및 환류

과정평가	
평가환류	

○○○○년(월) 직무교육 실적보고서

※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엑셀(Excel), 한셀 등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과정별로 실적을 작성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교육기관 정보

①기관명	②산재관리번호	③사업개시번호	④등록관서
④-1 등록분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보수)	
[] 안전관리자([]신규 []보수)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보건관리자([]신규 []보수)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안전검사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신규 []보수)	

2. 교육실적

⑤교육과정명	⑥교육대상	⑦교육종류	⑧교육시간	⑨교육형태	⑩업종	⑪이수사업장	⑫이수인원	⑬교육횟수

3. 담당자 정보

⑭성명	⑮전화번호	⑯전자우편 주소

직무교육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 ①~④ 안전보건교육포털(koshats.or.kr) 등록 기준 정보를 기입
- ⑤ 실제 운영한 교육과정명을 기입 (예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제조업)
-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중 하나를 기입
- ⑦ ‘신규교육’, ‘보수교육’, ‘전문화교육’ 중 하나를 기입
- ⑧ 시간 단위로 기입 (예시) 2시간 → 2, 90분 → 1.5로 표기
- ⑨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해당 교육형태를 기입
단, 혼합하여 교육하는 경우, ‘(혼합)교육형태1+교육형태2’으로 기입
(예시1)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한다면, ‘(혼합)집체교육+인터넷원격교육’으로 기입
(예시2) 집체교육, 현장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한다면, ‘(혼합)집체교육+현장교육+인터넷원격교육’으로 기입
- ⑩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기입
- ⑪ 교육을 이수한 직무교육대상자의 사업장 개소를 기입 (예시) 100개소 → 100
- ⑫ 총 이수자 인원 기입 (예시) 15명→15
- ⑬ 교육횟수는 매월 해당 교육과정을 몇 번 실시했는지 그 횟수를 기입
(예시) 1월 31일, 4월 1일 2회 교육 → ‘2’로 기입
- ⑭ 직무교육기관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성명을 기입
- ⑮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
- ⑯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성능검사 교육 수강신청서

※ 교육 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제5호 각 목의 설비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업종	
	소재지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 (건설업에 한함)	
	대표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명			

신청인	성명		국가기술훈위 취득종목 및 등급	
	생년월일		전자우편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실무경력(근속연수)	
	교육 분야			

위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성능검사 교육기관의 장 귀하

제 호

교육 실시확인서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교육 실시 사업장

- 사업장명:
- 대표자:

2. 실시한 교육과정

교육과정명	교육종류	교육기간	교육이수자(명)
		... ~ ... (시간)	

※ 교육이수자 명단은 별첨

위 사업장은 위의 교육과정을 실시하였으므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장

직인

■ 안전보건교육규정[별지 제6호서식] (삭제)

제 호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직무교육 ([신규 [보수)
- 전문화교육
- 성능검사 교육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 . . ~ . . . (시간)

위 사람은 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 40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무교육기관 또는 성능검사 교육기관의 장

직인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H. 운수 및 창고업(49~52)
01. 농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2. 임업	50. 수상 운송업
03. 어업	51. 항공 운송업
B. 광업(05~08)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06. 금속 광업	55. 숙박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56. 음식점 및 주점업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J. 정보통신업(58~63)
C. 제조업(10~34)	58. 출판업
10. 식료품 제조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1. 음료 제조업	60. 방송업
12. 담배 제조업	61. 우편 및 통신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3. 정보서비스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K. 금융 및 보험업(64~66)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64. 금융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5. 보험 및 연금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9.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L. 부동산업(68)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68. 부동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0. 연구개발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1. 전문 서비스업
24. 1차 금속 제조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2. 가구 제조업	P. 교육 서비스업(85)
33. 기타 제품 제조업	85. 교육 서비스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86. 보건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36. 수도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94. 협회 및 단체
F. 건설업(41~42)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41. 종합 건설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G. 도매 및 소매업(45~47)	97. 가구 내 고용활동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U. 국제 및 외국기관(99)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99. 국제 및 외국기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발행일 : 2024년 1월

■ 발행처 : 고용노동부

■ 피낸이

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오영민
안전문화협력팀	과장	박완근
	사무관	최정윤
	주무관	박환주
	전문위원	허성환

■ 문의

안전문화협력팀 (044) 202 - 892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상담센터 1644 - 4544